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1996. 10.

조 민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후

후

최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통일관련 단체들은 연구·세미나활동 및 남북한 교류·접촉 등을 비롯한 통일문제의 광범한 영역에 걸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남북대화를 비롯한 정부 당국간 접촉을 일관되게 기피해온 북한측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남북한 교류·협력의 채널을 민간부문에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하고 정부의 통일정책과 연계·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서론

현재 남북대화를 비롯한 정부 당국간 접촉을 일관되게 기피해온 북한측의 입장이 쉽게 변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북한 교류·협력의 채널을 민간부문에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검토할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 민족공동체 형성과 민간부문

민간단체의 활동에 기반한 민간부문의 역할은 통일과정의 모든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특히, 통일 이전단계인 남북화해·협력

의 단계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남북한 인적교류에 있어 정부측과 민간부문의 역할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정부 당국은 교류·협력의 원칙적 방향제시와 함께 법적·제도적 절차의 마련을 통해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북한 당국이 정부 주관의 교류·협력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간부문의 실행가능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규모 교류행사부터 지원하는 정책이 요망된다. 그러나 단순한 교류·협력의 차원을 넘어 공동기구 설립이나 통일후를 대비한 재사회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측과 민간부문의 역할은 상호보완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정부·민간단체의 관계정립 방향

통일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민간단체의 조직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남북한 화해·협력의 기조에 부응하여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보호·육성책의 마련이 바람직하다. 또한 민간단체의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 북한체제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조직적 성격과 활동의 내용이 보다 견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동의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4.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화해·협력은 남북한 주민간, 인적 교류·접촉에 토대를 둔 것으로, 남북한 주민간 교류·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측은 남한측이나 성사 여부는 대개 북한측의 태도와 입장에 달린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특히 민간단체 등에 의한 남북한 교류·접촉의 경우, 교류·접촉의 동기, 목적 등은 북한측의 입장과 바람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북한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각의 민간단체는 스스로의 역할을 발견하고 재정립해 나가야 할 단계이다.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남북간 교류·접촉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 사회의 개방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간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그러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북한의 체제유지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성사되기는 어렵다. 특히 남북간 이념적 갈등과 팽배한 경쟁의식을 감안한다면, 이념적·정치적 갈등과 마찰의 요소가 적은 부분부터 교류·협력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 문화예술, 종교, 여성, 시민단체 및 재야통일운동단체 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학술단체들에 의한 교류·접촉의 경우 대학, 연구기관, 학회 등

민간학술단체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문 영역 면에서는 순수학문분야의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세부 전문분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류의 접근방식면에서는 자료 및 정보교환에서부터 분야별 학술회의 공동개최 그리고 공동연구 및 편찬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중국 연변, 일본, 미국 등 해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민간 주도의 「남북문화교류센터」 설립을 통해 각종 학술교류 및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남북간 상호 이해와 교류·협력의 기반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종교단체는 현재 각 종교 및 교파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북선교활동 및 지원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종교, 교단, 교파의 참여 아래 통일과 관련된 결성체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과 함께 약품, 의류 등 생필품의 적극적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안별 협조와 비판을 제기하면서 정부/시민단체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여론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통일정책에 반영하는 동시에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의 창출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재야단체의 역할로는 직접적인 통일운동보다는, 한반도의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군축 및 평화운동의 전개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북한사회에 대해서도

제기함으로써 재야단체가 추구하는 민족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인간다운 삶의 구현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5. 결 론

통일문제에 대한 민간부문의 열정과 적극적인 관심 등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요망된다.

통일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조직 및 물질 기반에서 전실한 민간단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러한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민간단체들은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한 통일과정에서의 역할을 확인하면서, 시민사회의 동의를 기반으로 확충해 가는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요망된다.

목 차

제 I 장 서 론	1
제 II 장 민족공동체 형성과 민간부문	4
1. 남북 화해·협력과 민간부문	4
2. 통일문제의 정부주도 및 창구단일화	12
가. 정부주도 통일논의의 당위성	12
나. 창구단일화	15
제 III 장 정부·민간단체의 관계정립 방향	20
1. 정부·민간단체의 역할모형	20
2. 민간단체의 성격 및 국제민간기구	24
가. 민간단체의 분류	24
나. 남북관계와 국제민간기구	29
제 IV 장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35
1. 민간부문 교류·협력사 및 현황	35
가. 민간부문 교류·협력사	35
나. 남북 인적교류 현황	38
2. 민간단체의 역할	43
가. 학술단체	44

나. 문화예술단체	46
다. 종교단체	48
라. 시민단체 및 재야단체의 역할	52
제V장 결론	56
참고문헌	60
<부록: 1> 통일원 유관단체현황	64
<부록: 2> 북한의 사회단체	77

제 I 장 서 론

통일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공감되고 있다. 그런데 교류·협력의 원칙적인 방향과 방법은 「남북기본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이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자간의 합의문서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와 의의는 상당히 크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문서들이 사문화될 수밖에 없고 또한 합의서의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수록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북한이 교류·협력을 기피한다는 데에 있다. 즉, 공산권이 와해되고 소련연방이 해체되는 급격한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정세의 숨가쁜 변화과정 속에서, 수세적 입장에서 채택한 합의서에 대해 북한은 처음부터 실천할 의사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합의서는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원칙적 선언의 성격을 띤 문서로, 구체적으로 실천의 우선 순위 또는 절차적 과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천과정에 대한 합의는 남북간 양측이 사안별로 협의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북한 핵문제, 김정일의 권력승계문제, 그리고 북한의 극도의 위기에 봉착한 경제난 등의 북한 내부사정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져 기본적인 대화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상호간에 체제유지에 부담이 없으며 실익이 있는 부분부터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교류와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당국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부분에서부터 교류·접촉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교류가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도주의적 분야를 비롯한 학술·과학, 문화·예술, 종교, 여성 및 청소년, 스포츠 등의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접촉은 북한체제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남북대화를 비롯한 정부 당국간 접촉을 일관되게 기피해온 북한측의 입장이 쉽게 변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북한 교류·협력의 채널을 민간부문에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단계라고 보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통일과정에서의 민간단체의 역할은 민족공동체 형성과정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민족공동체 형성과정은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통일국가완성단계를 포괄하는 점진적·단계적 과정으로, 민간단체의 활동에 기반한 민간부문의 역할은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특히, 통일 이전단계인 남북화해·협력의 단계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다음으로 통일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주도의 당위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와 함께 남북교류·접촉과정에서의 ‘창구단일화’ 논리를 검토하고자 했다.

정부 및 민간부문의 고유한 역할 영역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정부·민간단체간의 관계정립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자간 지원·간섭이라는 변수를 통해 다양한 역할모형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통일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순수민간단체의 성격을 민간단체의 일반적 유형을 통해 검출하고자 하였으며, 바로 이러한 비정부 차원의 순수민간단체들이 국제민간기구, 즉 NGO와의 연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에 우호적·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역할 모색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남북한간 민간부문의 교류 및 협력의 역사적 과정을 간략히 개관하고 최근의 교류·접촉의 현황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정부부문, 즉 민간부문에서 통일논의 및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발적 결사체들인 학술단체, 문화예술, 종교, 시민단체 및 재야단체 등의 활동상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더불어, 각 분야의 민간단체들의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한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Ⅱ장 민족공동체 형성과 민간부문

1. 남북 화해·협력과 민간부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앞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의 반영이며, 정부의 미래지향적 노력의 결실로서 제시되었다.¹⁾ 이 방안은 현재와 같은 분단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남북한간 체제·이념·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질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이러한 이질화가 향후 민족통일의 결정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현실적 심각성을 인식한 데에서 나왔다.

민족공동체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민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관과 신념에 입각하여 민족 단위의 생존과 번영을 지향하여 집단생활을 영위하는 생활공동체이다. 이러한 민족공동체는 생산, 분배, 거래행위의 단일권 형성을 의미하는 ‘경제공동체’, 사회적 가치규범 및 행위, 그리고 문화의 공유를 의미하는 ‘사회·문화공동체’, 여기에다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뜻하는 ‘정치공동체’의 형성으로 완성된다.²⁾

1) 제49주년 광복절기념 대통령경축사, 1994.8.15.

2) 박영호, “민족공동체 형성과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추진방향,” 광복 50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8.11), pp. 18~19.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또한 이러한 공동체 형성의 과정을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완성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의 이행구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각 단계 및 그에 해당하는 국가체제와 공동체유형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민족공동체 형성단계>

통일단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완성단계
국가체제	1민족2국가2체제	1민족2국가2체제	1민족1국가1체제
공동체 유형	사회·문화·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

이처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점진적·단계적 평화통일구도로서, 남북한간 공존공영에의 접근과정 자체가 중요시되는 특성이 있다. 여기서 통일과정의 형식적·도식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점진적·단계론적인 접근에 대한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³⁾ 이러한 접근법은 통일과정의 역동성에 의해 각 단계마다 구체적이고 유연성있는 정책기조를 통해 상황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⁴⁾

3) 길정우, “남북 공존공영을 위한 참여화정책의 구현방안: 비정치적 분야의 정책방안,” 『통일문제연구』, 제5권 2호 (1993 여름), pp. 94~96.

4) 예컨대 3단계 통일방안은 북한의 돌발사태의 발생에 따른 통합조건이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는 경우에도, 단계론적인 통합구도는 상황변화에

민족공동체의 기본구도는 1991년 12월 「남북한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의 틀 속에 반영되어 있다. 「기본합의서」의 남북교류·협력(제3장)을 규정한 여러 조항에서 이미 사회·문화 공동체 및 경제공동체의 형성방안의 대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었다.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⁵⁾

이러한 합의사항을 통해 정치·군사적 분야와는 달리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따라서 민족공동체는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및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남북한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민족공동체 형성단계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단계」는 남북간의 상호 적대와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긴장완화와 화해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교류·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화해적 공존을 추구하는 단계로 상정되고 있다.⁶⁾ 특히 이 단계에서는 남북

대응하여 단 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5) 「기본합의서」, 제3장(남북교류·협력) 제16조.

6) 남북 화해·협력은 1992년 2월 19일에 각기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의 이행·실천에 의해 비로소 남북 화해·협력관계가 제도화될 수 있다.

한이 상호 체제의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문화·경제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켜가는 것이 요망된다. 화해·협력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교류·협력이야말로 통일과정을 꺾어가는 첫 단추라 하겠다. 이처럼 민족공동체가 점진적·단계적 형성의 과정을 상정한 것이라면, 당연히 첫 단계인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은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와 함께 민족공동체 형성의 토대가 될 것이다.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은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 및 증대를 목표로 삼는 단계인 바,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하에 올바른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의 남북관계의 수준과 남북한 사회의 변화전망을 고려하여 남북한 통합의 객관적 조건과 제약요소들을 반영하여 이에 기초하여 접근해 가야 하며, 그리고 남북한 간의 대립과 경쟁상태를 극복하고 조화점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질성을 이해하고 동질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남북한간 공동체모형의 유형으로는 흡수모형이나 평균적 결합모형보다는 발전적 통합모형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원칙과 내용은 세계사적 변화와 발전추세에 부응하여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⁷⁾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본방향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간 교류 증대와 동질화작업을 통

7)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24~142.

해 북한사회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민족문화에 토대를 둔 전통적 가치의 공유를 확인하는 작업과 함께 남북한 사회·문화의 변화전망에 비춰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지향적 가치의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분야부터 동질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의 사회변화를 추동할 혁명 후기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계층, 학생 및 청소년층간의 인적교류를 활성화시켜 개방세계에 대한 정보유입의 통로와 그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북한사회의 개혁·개방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는 민족동질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집권세력과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면서, 점차 통일에 대한 비전과 실용적 태도를 지닐 수 있는 새로운 지도층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이 된다.⁸⁾

한편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주체와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차원의 상호 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남북한 인적교류 추진방안과 밀접히 연계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민족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 잘 드러나듯이, ‘민간과 정부 공동추진’ 방안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이러한 국민여론을 감안한다

8) 조민, “민족공동체 형성방안을 통한 통일과정,”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110~111.

면, 남북한 인적교류에 있어 정부측과 민간부문의 역할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 경우 정부 당국은 교류·협력의 원칙적 방향제시와 함께 법적·제도적 절차의 마련을 통해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이 바람직하다. 특히 북한 당국이 정부 주관의 교류·협력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간부문의 실행가능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규모 교류행사부터 지원하는 정책이 요망된다. 그러나 단순한 교류·협력의 차원을 넘어 공동기구 설립이나 통일 후를 대비한 재사회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측과 민간부문의 역할은 상호보완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이 민간 차원의 수준에서도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남북한간 이질성의 심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인해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의 강구가 기대된다. 남북한 주민의 이질화는 남북간 교류 및 접촉이 거의 제한된 가운데 분단상황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더욱 심화되어왔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남북한의 분단을 영구히 고착

9) 인적 교류 추진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여론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귀하는 학자, 예술인, 종교인의 방북 등 남북한간 인적 교류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민간과 정부의 공동추진’에 대한 지지도가 7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민간의 자율’(16.8%)이 ‘정부 주도’(8.3%)보다 훨씬 높은 반응도를 보였다.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119~121.

시키고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이 정치적 통합을 이룩한 이후에도 동서독 주민간의 이질화로 인해 내적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준다.¹⁰⁾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남북한간 이질화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한다면 민간부문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 민간단체·사회단체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동질성을 확인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망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과정으로서 교류·협력이 가진 제한적 성격은 남북한 양 정부간의 정치적·군사적 관계개선의 속도와 폭에 의해 교류·협력의 구체적 발전과정이 규정받고 있는 점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교류·협력은 남북관계를 이끌어가는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군사적 관계에 의해 규정받는 종속변수적 성격을 지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¹¹⁾ 사실 남북한 상호신뢰의 문제는 정치적·군사적 갈등과 대립관계가 해소됨으로써, 다른 차원에서의 신뢰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를테면 정치·군사적 갈등은 모든 갈등의 근원적 요소이자 무엇보다도 먼저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신뢰 구축없이 다른 부

10) Mary Fulbrook, "Aspects of Society and Identity in the New Germany," *Daedalus*, vol. 123, no. 1 (Winter 1994), pp. 211~234.

11) 박순성, "남북한 경제협력과 통일 - 제도론적 통일론의 시각에서 -," 제 10회 통일문제 심포지엄, 「남북교류협력과 통일」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4.9.30), pp. 6~7.

문에서의 신뢰 형성은 무망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 상호 신뢰의 문제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나아가는 발전적 과정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화해·협력단계에서 접촉 및 교류를 통해 양자간 상호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본격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상호 체제인정 및 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증상 금지, 파괴·전복행위 중지 등은 정치적 신뢰를 쌓기 위해 이행되어야 할 전제조건들이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상호 불신과 대립구조를 벗어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비정치적 분야, 즉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의 신뢰구축을 위한 협력사업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회·문화분야에서의 인적 접촉과 교류·협력은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개선시켜 나가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런데 남북간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정부·당국자간 접촉은 북한당국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간 접촉 및 교류 자체가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나아가는 신뢰 구축의 과정에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정치적인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민간부문의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비정부 차원, 즉 민간부문의 역할

은 무척 중요하지만, 우선 민족공동체 형성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단계에서 「사회·문화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들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정부 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는, 정부와의 조화·협조 속에서 개인 및 민간단체들의 역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단계라고 여겨진다.

2. 통일문제의 정부주도 및 창구단일화

가. 정부주도 통일논의의 당위성

통일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보다 증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통일논의를 비롯한 남북관계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정부주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리와 함께 대북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창구단일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통일과정에서 민간부문에서의 통일논의의 개방화에 따른 문제점과 더불어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주도의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통일논의가 무분별하게 개방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바, ① 사회혼란 야기, ② 대북협상력 약화, ③ 국민적 의사 확인 및 지지확보의 어려움, ④ 북한의 변화유도 난망, 그리고 ⑤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희석될 우려가 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논의를 무조건·무분별하게 개방화하고 다양화할 경우 불순한 목적의 반체제논리가 통일논의로 포장되어 표출됨으로써 순수한 통일논의와 운동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좌경세력들이 통일논의의 다양화를 이용하여 통일을 가장한 정치투쟁 또는 반체제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성급하게 통일논의를 개방할 경우 통일방안 및 통일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통일투쟁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혼란이 조성될 수도 있다. 둘째, 대북 협상력 약화라는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현단계에서 통일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개방 요구를 허용할 경우 대북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 협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민간부문의 통일논의·운동이 정부의 입장 및 통일정책보다 앞질러 갈 경우, 정부의 대외적 협상력에도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통일논의의 개방화·다양화에 따라 국론이 분열될 경우,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의사 확인 및 국민적 지지확보가 어려워진다.

넷째, 평화통일의 전제인 북한의 변화유도 문제와 관련하여, 민간부문에서 무분별하게 북한당국과 접촉하거나 탈법적인 방법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할 경우, 북한은 남한사회에 친북세력이 많은

것으로 오판하여 통일전선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부문에서의 자의적인 통일운동이 계속 방치된다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안정적인 변화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섯째, 국제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문제는 민족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로서의 성격을 띤 것으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공조체제의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통일운동이 무분별하게 전개되어 통일문제의 민족내부적 측면만 강조된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의 중요성이 약화되어 정부가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민간부문의 통일논의 및 통일운동의 일정한 한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통일문제에서 정부의 고유한 역할은 세 차원에서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북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확보, 통일정책의 수렴과 조정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선도 및 안내 역할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통일논의가 다원화되고 통일운동이 무분별하게 전개됨으로써 국론이 분열될 경우, 정부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으며, 또한 북한이 민간차원의 통일논의·운동을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이용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추진 및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의적인 통일논의·운동은 억제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의 확보는 당연히 정부측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는 통일논의의 수렴 및 조정의 유일한 주체이다. 비록 개방화·다양화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견해 표출은 불가피하나, 이러한 견해들은 수렴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특정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통일문제에 있어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통일논의를 수렴·취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남북관계에서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는 정부가 담당하여 이를 통일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정부의 고유한 역할 가운데 하나로서 민간부문의 선도 및 안내 역할과 관련하여,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임의적으로 대북 교류·접촉을 추진할 경우 신변상의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과, 또한 북한 사정에 대한 안내 역할을 정부가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통일논의·운동을 비롯하여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 의한 남북한 접촉 및 교류의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역할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통일과정에서의 민간부문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창구단일화

대북 접촉 및 교류에서 정부의 창구단일화 문제는 민간단체와

입장의 차이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현안이다. 정부는 모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야 한다는 창구단일화 방침을 천명하고, 이를 어기는 단체에 대한 제재방침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를 비롯한 일부의 민간단체들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정부가 지원창구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제기구 등을 통한 별도의 지원을 시도하여 정부의 창구단일화 방침과 배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창구단일화 방침을 밝힌 정부측 입장은 남북관계의 현실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선 대한적십자 이외의 별도 창구를 허용했을 경우, 부분별한 대북지원 경쟁이 유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북측은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인 당국배제전략을 고수하게 되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종교계에서의 종단, 종파간 대북선교에 있어서 선점 효과를 의식한 나머지 부분별한 대북지원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북측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단체로만 창구개설을 시도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 한국정부가 더욱 배제될 위험성이 크다.¹²⁾ 또한 공인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12) 1990년 11월 6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북측에 「남북예술문화교류를 위한 접촉」을 제의하면서, 모든 예술문화의 교류 및 접촉은 한국예총 및 10개 회원단체와의 협의체를 통해 창구일원화 되어야 함을 관계당국과 전예술인에게 촉구한다는 이른바 ‘창구일원화’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한국예총의 ‘창구일원화’ 주장은 곧 북측의 반박을 초래하게 되었다.

동년 11월 4일 북한 문화예술총동맹 대변인은 남북문화예술교류 창구일원화 철회를 주장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남조선 「예총」이 북남 문화예술교류에 관심이 있다면 부당한 창구일원화 주장을 철회해야 하며, 자주적인 민간 대화와 교류를 주장하는 남조선의 모든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우리와 마주 앉아 문화예술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문제를

정부의 허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 경우 국제기구의 객관적 선정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외된 기구의 반발 등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대북지원의 창구 문제와 관련하여, 민간단체들이 인도주의적 동포애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대표적 인도적 기구인 대한적십자사를 창구화하는데 거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북지원 창구단일화 논리와 사항은 「기본합의서」에서 찾을 수 있다. 동 문서 제3장 제18조에 규정된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라는 합의사항을 들 수 있다. 이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면 민간단체들에 의한 대북지원은 개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적십자사를 창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및 자율성의 한계가 극복되지 않는 한, 정부의 ‘창구단일화’ 논리는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¹³⁾

한편 종교단체·민간단체를 비롯하여 UN 등 국제기구와 미·일

토의해야 한다고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 13)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민간차원의 북한수해구호물자 지원을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원품목을 제한하자, 이에 종교단체, 사회단체, 통일운동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지원품목 제한에는 계속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대한적십자사로의 창구단일화에는 수용적 입장을 보였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접수된 지원구호금 현황은 1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96년 8월 26일 현재), 대부분 7차에 걸친 지원을 통해 북한 당국에 전달된 바 있다. 대한적십자사, 「북한수해 물자지원현황」보고서, 1986.8.

등 우방국은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위기와 최근의 수해로 인한 극심한 식량부족 사태가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인식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정권이 극도의 식량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기조성에 의한 위기 극복의 방식」, 즉 무력도발의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불허하고 창구일원화라는 경색된 대북정책을 고수할 경우 인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국내외 여론과 갈등을 일으키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도주의적 명분에 입각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상호공존의 원칙과 동포애를 확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단계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¹⁴⁾

그런데 민간부문에서 주장하는 대북지원의 타당성 역시 「부속합의서」에서 발견된다. 남북 「기본합의서」에 이은 부속합의서의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의 조항 가운데 다음 내용이 주목된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¹⁵⁾

14) “지상국회: 대북창구단일화,” 「조선일보」, 1996.7.2 참조

15) <「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제3장 제15조 ⑤항 참조

이처럼 자연재해를 당한 상대측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도울 것을 규정한 조항은, 지난해에 이은 올해의 북한 지역의 수해에 대해 남측의 인도주의적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한 원조의 타당성을 밝힌 조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국내 일부 냉전세력들에 의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시비를 빌미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속도를 감안할 때, 현실감각을 상실한 냉전적 시비에 대한 불합리성과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정부가 당국간 대화재개라는 목표에 집착하여 모든 교류·접촉을 이와 연계시키려고 할 경우, 민간부문의 교류 및 협력의 증진에 걸림들로 작용할 우려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전향적인 인식이 요청되는 시기라고 하겠다.

제Ⅲ장 정부·민간단체의 관계정립 방향

1. 정부·민간단체의 역할모형

현재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수세적·소극적 태도에서 기인하고 있음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20세기를 지배해온 양대 이데올로기의 실험적 경쟁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난 데서 오는 당연한 귀결로서 “남북한 사이의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라는 역사적 큰 흐름을 반영한 자신감을 표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강점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남북한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접촉 및 교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단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남북관계에서 북한측의 자발적인 태도변화를 통한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고 보면,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의 마련은 우리 정부의 과감하고 진취적인 결단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을 최소화시키려는 인도주의적 원칙 위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인내력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한반도의 긴장상태의 해소 및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

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길 이외에는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서독식의 이른바 ‘접촉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외에 마땅한 대안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 대개 ‘접촉을 통한 변화’는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이와 함께 우리 스스로의 변화도 동시에 전제될 필요가 있다.¹⁾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자생적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으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대북인식 및 정책 역시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우리의 변화는 통일정책의 원칙 및 기본방향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전략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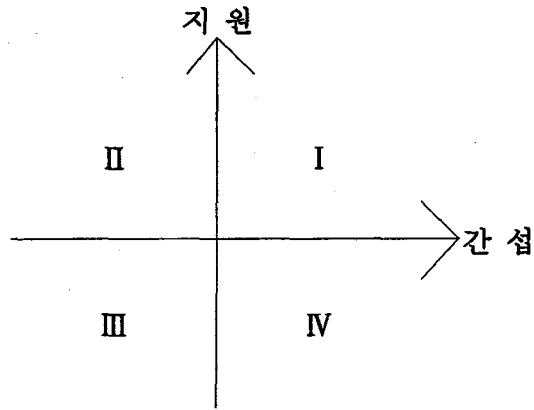
일례로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reciprocity)원칙의 적용에 대한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주고받는’ 형태의 상호주의 원칙은 남북관계에서처럼 불신과 적대적 관계에서는 진정한 상호성이 실현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국제관계에서 상호성은 국가간 끊임없는 접촉, 교류, 대화, 협력의 틀 속에서

-
- 1) 남북관계에서 ‘접근’은 일방적일 수 있지만, 반향이 없다면 ‘접근’의 목적인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의 대북정책은 바로 이러한 반향없는 일방적 접근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 2) 김학성, “남북한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독일사례의 시사점,” 「동·서독 인적교류의 실태와 절차적 특징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10) 참조.

신뢰관계가 구축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독일통일 이전의 동서독관계를 살펴보면, 양독간 ‘주고받기’식의 상호성보다는 분야간 연계적 성격을 띤 ‘상호주의’가 적용된 측면이 있다. 즉, 서독의 동독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양보와 동독의 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에 대한 양보가 교차적으로 연계된 것이었다. 이러한 교차적 연계도 처음부터 합의된 것이라기보다는 서독의 일방적인 양보가 선행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었다. 이를 테면 서독의 우선적 양보 자체가 양독간의 수많은 대화를 가능케 했으며, 이를 통하여 신뢰가 구축됨으로써 상호 조건을 제시하는 타협이 아니라, 묵시적 형태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서 참된 상호성을 찾기 위해서는, 양독관계를 통해 시사받을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일방이 먼저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며, 이 경우에는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양보를 통한 신뢰성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이다.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성의 증대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민간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특히 민간단체의 역할을 전제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정부·민간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또는 간섭·통제, 즉 ‘지원·간섭’간의 함수관계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다.



제 I/4분면은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간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상징한 것이며, 제 II/4분면은 정부의 지원은 있되, 간섭은 없는 경우로 상징할 수 있다. 제 III/4분면은 정부의 지원도 간섭도 없는 경우를, 그리고 마지막 제 IV/4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는데, 오히려 민간단체에 대한 간섭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등의 4개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의 지원은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재정적 후원 또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민간단체의 성격,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활동성과에 따라 개별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의 내용과 성격은 달라진다. 위의 좌표에서 민간단체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있되,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

다는 측면에서 통제·간섭이 없는 상태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원에 따른 간섭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과는 무관한 상태에서 민간단체의 통일논의와 활동이 제약과 통제를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의 활성화를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조화와 협조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정부·민간간의 다양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설립목적과 활동 등에 따른 민간단체의 다양한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민간단체의 성격 및 국제민간기구

가. 민간단체의 분류

민간단체는 정부 및 비즈니스 부문과는 무관한 모든 자발적 단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부 부문을 제1부문, 영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부문을 제2부문이라 한다면, 민간단체는 제3부문으로 지칭된다. 제3부문인 민간단체는 흔히 비정부기구, 즉 NGOs(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민간단체는 일반적으로 개별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으나 집단이익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된 그룹, 조직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된 그룹, 조직 및 결사체를 말한다. 민간단체는 또한 개별 시민들과 국가와 기업들 사이를 매개·중재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그런데 제1부문인 정부, 제2부문인 비즈니스, 그리고 제3부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은 그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 배경을 각각 달리한다. 정부의 동원자원이 명령 및 강제에 기반한다면, 비즈니스 부문은 무역 및 교환행위를 통해, 그리고 비공식·비영리부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NGO는 결사체에 참여하는 자발적 시민들의 가치공유 및 헌신적 활동에 토대를 두게 된다.³⁾ 이처럼 민간단체의 성원을 동원하는 자원은 물질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가치의 공유 및 헌신성에서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민간단체가 정치적 권력에의 지향성이나 영리추구와는 상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 민간단체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가에 따라 이들 단체의 조직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또한 조직의 관리구조, 책임과 의무, 동원자원에의 접근 방식, 국외자와의 관련성 등의 측면에서도 민간단체의 성격은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결사체들, 즉 민간단체들을 다음과 같이 세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 (1) 배타적인 회원자격을 지닌 결사체로 회원간 상부상조를 목

3) Isagani R. Serrano, *Civic Society in the Asia-Pacific Region* (CIVICUS, Washington, D.C., U.S.A, 1994), pp. 3~15 참조.

적으로 한 원주민사회, 협동조합, 종교단체, 동업자조합, 전문가단체 등.

(2) 회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지방단위의 자선사업단체, 篤志家 등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 및 개발기구, 지역사회의 자선사업협회, 사회봉사클럽, 그리고 비영리법인 등.

(3) 擬似결사체라 할 수 있는 단체로, 앞의 두번째 유형의 민간단체와는 거리가 먼 결사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체들로는 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NGOs”, ② 정부에 의해 조직된 관변단체 (GONGOs), ③ 기부금에 의해 설립된 “NGOs”(DONGOs), 그리고 ④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 목적으로 조직된 “NGOs”(BONGO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⁴⁾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회원자격의 임의성 및 자발성에 기초한 타인지향적 민간단체는 소속성원의 상부상조를 추구하는 단체, 즉 협동조합, 종교단체, 동업자조합, 전문가단체 등과 그리고 구제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의사결사체적 성격을 지닌 민간단체 등과는 엄격히 구분된다.

4) <표 1>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정부 차원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지만, 민간단체의 일반적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민간단체의 유형분류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위의 책, pp. 5~6 참조.

<표 1> 시민사회 내의 결사체(민간단체)

<p>(1) 회원자격의 엄격한 규정/상부상조 목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주민사회 2. 협동조합 3. 종교단체 4. 동업자조합 5. 전문가단체
<p>(2) 회원자격의 임의성·자발성/타인부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단위의 자선사업단체 2. 篤志家가 설립한 사회복지 및 개발기구 3. 지역사회의 자선사업협회 4. 사회봉사클럽 5. 비영리법인
<p>(3) 擬似결사체/구제사업과 무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적 이익을 위한 “NGOs” 2. 관변단체(Government-organized “NGOs”: GONGOs) 3. 기부금에 의해 설립된 “NGOs”(Donor-organized “NGOs”: DONGOs) 4. 영리추구형 “NGOs”(Business-organized “NGOs” : BONGOs)

또한 민간단체는 시민사회 및 국가와의 관련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단체의 위상과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단체는 정부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조직적 위상의 독립성 및 자율성에 따라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결정되며, 또한 단체의 활동내용이 정부정책에 협조·동의하는 단체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정책에 대한 사안별 협조 내지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대안적 논리를 개발하는 단체인가에 따라서도 성격이 달라진다. 전자는 국가부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단체로 정부의 정책 및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관변단체로 부른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친화적인 조직으로 개인의 사적 동기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결속된 친정부적 단체들도 많다. 이러한 조직들과는 달리 자발적 성원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환경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등의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하는 민간단체들과 또한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민간단체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서로 다른 동기와 목적에 의해 설립된 민간단체들을 비롯한 다양한 종교단체들의 관심과 활동이 통일논의 및 통일운동에 접맥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현상이라 하겠다.⁵⁾ 이는 물론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

5) 종교단체의 통일운동은 기본적으로 선교적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족애와 민족화해의 입장에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다. 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의 6개 종단에서 “인도주의적 동포애를 고양시키고 민족사회의 화해와 일치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범종단 북한수재민 돕기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사례는 주목된다. 범종추, 「1.15 범종단 북한수재민 돕기추진위원회 고문회의 및 기자회견자료」 (1996.1.15) 참조.

루고자 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열망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최근 북한사회의 붕괴위기와 극심한 경제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의 증폭은 결코 우려할 현상은 아니다. 정부는 오히려 민간단체 및 종교단체들과의 상호 이해와 협조의 틀을 구축해 나가면서, 통일과정에서 이들 단체의 순기능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단체의 통일은 의와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⁶⁾

나. 남북관계와 국제민간기구

한편 이러한 민간단체·NGOs의 활동으로 국가사회 내에서는 정부기구와,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와 상호 경쟁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⁷⁾ 최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NGOs는 유엔 주재하의 각국

6)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가 주최한 「21세기 통일시대와 민간사회단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심포지엄’(1996.6.21)은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을 주장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7) 민간단체·NGOs에서 관심을 갖는 영역은 대개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 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범지구적 행동계획으로 상정된 21개항 의제 가운데 각각 독립된 9개 부문에서 다루는 의제들과 매우 유사하다. 9개 독립 부문은 ① 여성, ② 아동 및 청소년, ③ 원주민 및 그들 지역사회, ④ NGOs, ⑤ 농부, ⑥ 노동자 및 노동조합, ⑦ 과학·기술공동체, ⑧ 비지니스 및 산업, ⑨ 지방정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마지막

정부대표들의 회합에 민간대표를 파견하고 정부주도의 논리에 대응논리를 제시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전지구적인 핵심문제, 즉 빈곤, 실업 그리고 사회적 통합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 주최하에 1995년 3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과 「인간중심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두고 국제협력과 국가정책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WSSD)를 개최한 바 있다.⁸⁾ 이 회의를 계기로 유엔(UNDP)은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사회개발정상회의의 목적을 3가지, 즉 ① 지속가능한 인간개발(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SHD), ② 새로운 발전의 동반자, ③ 유엔의 개혁과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WSSD에서는 ① 빈곤의 퇴치, ② 생산적 고용의 확대, ③ 사회통합의 제고를 핵심의제로 삼았다.

그러나 이 3가지 문제는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두 항목, 즉 ⑧ 비즈니스 및 산업 부문과 ⑨ 지방정부 부문은 국가조직 또는 영리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민간단체는 무엇보다 자발적 시민운동의 발전·저해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만 의의가 있다. 물론 민간단체의 범주에 소비자협회나 다른 형태의 자발적 조직체 등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8) 사회개발정상회의(WSSD)는 '90년대 유엔에 의해 개최되는 7개 회의 중의 하나이다. 이들 회의 중에는 리우환경회의('92), 비엔나인권회의('93), 카이로인구회의('94), 북경여성회의('95) 등이 있다. WSSD는 유엔 창설 50주년에 맞추어 '새로운 유엔탄생'이라는 목표를 겨냥하여 지금까지의 발전전략을 재검토하고 냉전 종식 후의 세계질서에 맞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한다는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다. (인간사회발전한국포럼, 「WSSD의 개최배경과 논의과정」(1994.12); 인간사회발전한국포럼,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개발정상회의」, 기사연소식 10호, 1994.8).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⁹⁾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단체, 그리고 국제단체들의 협력과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여 한국사회의 민간단체들은 전세계의 NGOs와의 연대를 모색하는 한편,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Korea NGO Forum for Social Development)을 조직하여 참가보고회, 워크샵,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WSSD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상당히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평가된다.¹⁰⁾

여기서 민간단체의 성격을 규정한다면, 민간단체는 특정 단체에 소속감을 표명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개인들로 구성된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 of citizen)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단체들의 배경, 결집동기, 열망, 비전, 활동목표 및 활동수단, 그리고 여러 가지 난관과 성공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민간단체들에 의한 사회적 발전과 안정 그리고 국민적 조화에 대한 기여도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9) 인간사회개발한국포럼, WSSD(1995.3.6~12) 「코펜하겐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와 세계NGO포럼」(1994.12) 자료 참조.

10) 「인간사회발전 한국포럼」은 사회발전정상회의(WSSD)에 대응한 '95 사회발전 민간대회(NGO FORUM '95-Copenhagen) 참가를 계기로 12개 민간단체들의 연대기구를 결성하였다('94.7). 이 포럼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노총준비위원회, 대한YMCA전국연맹, 영등포산업선교회, 참여연대, 크리스찬아카데미사회교육원,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인간사회발전 한국포럼, 「한국 사회발전 보고서 - 12개 민간단체의 종합보고서」, 1995.2.28).

민간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지구적 범위에서 활동하는 국제 민간기구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¹¹⁾ 특히 국제적인 민간단체들 가운데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국제적십자사¹²⁾, UN 산하의 세계아동기구 (UNICEF), 국제농업기구(FAO), 그리고 국제식량기구(WFP), 세계 교회협의회(WCC)¹³⁾, 국제선명회 등의 국제기구들의 최근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한 대북식량지원 계획과 추진활동 등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국제민간기구는 북한 당국의 수재 구호물자 지원요청에 응함으로써 대북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한국정부의 국제적 입지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민간단체는 국제사회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입장을 널리 이해시키는 한편, 국제민간기구와의 연대를

-
- 11) 연수보고서 95-1, 「시민단체해외연수결과보고서 - 인간사회발전부문 중심으로」 (정무장관(제1)실, 1995.5), pp. 9~12 참조.
- 12)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에서는 북한 당국의 지원요청에 응하여 '95년 9월과 '9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각 회원국 적십자사에 US\$ 10,532,500 상당의 물자 및 현금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호응한 각국 적십자사의 지원실적은 한국을 포함, 총22개국 적십자사가 참여하여 연맹 호소액의 61%에 달하는 US\$ 6,441,500의 금액을 지원했다.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은 '96년 10월까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 「보고서」 (1986.8) 참조.
- 13)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하고자 세계 100여 개국 3백여 교회가 구성한 개신교의 협의기구이다. WCC는 선교활동을 기본으로 지구상의 빈곤과 사회발전,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특히 정의, 평화의 문제를 근간으로 사회참여, 환경, 원주민문제, 공동체, 지구화, 민주주의, 인권 문제 등 광범한 주제를 다루면서 전세계에 걸쳐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단체해외연수결과 보고서」, pp. 37~39 참조.

통해 북한사회의 개방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단계라고 하겠다.

그런데 민간단체·NGOs가 비정부기구라고 해서 반드시 반정부적 활동만을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세계적 환경감시기구인 그린피스의 활동에서 보듯이,¹⁴⁾ 환경운동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 관계국가와의 설득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이에 부응한 상대 국가의 정부당국 역시 이러한 NGO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지금까지 다양한 성격의 국제민간기구의 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본 까닭은 향후 국제무대에서 빈곤 및 사회발전, 인권, 여성 및 아동 문제, 환경 및 자연보호, 반핵 및 평화운동 등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국제민간기구를 비롯하여 남한의 민간단체와 북한의 사회단체 간의 상호 경쟁과 협조를 위한 교류·접촉의 경우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통일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민간단체의 조직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남북한 화해·협력의 기조에 부응하여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보호·육성책의 마련이 바람직하다. 또한 민간단체의 입장에서는 정부로

14) GreenPeace는 1971년 핵실험 반대를 위한 소규모의 그룹으로 출발하여 반핵 및 환경운동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500여 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두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정부 국제민간기구로, 21세기 지구촌 사람들로 하여금 NGO의 역할에 커다란 기대를 모으는데 성공한 국제민간기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 북한체제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바탕으로 조직적 성격과 활동의 내용이 보다 견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동의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창의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제Ⅳ장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1. 민간부문 교류·협력사 및 현황

가. 민간부문 교류·협력사

분단 이래 지금까지 남북한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은 정치적 관계의 부산물로 비록 단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사회문화분야 및 인도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다. 사회문화분야에서 체육회담, 문예·학술·보건·언론분야, 종교분야, 여성분야, 학생(교육)분야, 그리고 인도분야의 적십자회담을 비롯하여 역사왜곡 문제, 정신대 문제 등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안에 걸쳐서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 의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은 분단체제가 성립된 이래 비교적 일찍부터 이루어져왔다.¹⁾ 그럼에도 특정한 시기에 예외적으로 활성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동안의 소강상태와 침체분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어왔다.

남북한 교류가능성은 '70년대 이전까지는 한반도 주변상황의 경직된 냉전 구조로 인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였다. 그후 '70년대에 와서 국제적 테탕트 분위기를 맞이하여 남북적십자회담, 7·4공동성명 등을 계기로 일시적이거나 남북한간 해빙무드가 나

1) 회담대책개발기초자료, 「남북사회문화·인도분야 회담 관련 주요일지」 (서울: 통일원, 1995.5) 참조.

타나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이후 1984년 하반기 이래, 남북간에는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및 국회회담 예비접촉에 이어 IOC 중재하에 체육회담이 열리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대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리하여 남북 대화 차원에서는 활발하고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높은 대내외적 기대와 관심 속에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상호교류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남북한관계가 질적인 측면에서 진일보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남북대화는 비록 남북한 정부 당국자 주도로 진행되었지만 정치·군사 분야가 아닌 사회·문화, 체육,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대화가 진행되었다. 남북한은 1984년 11월 이래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경제회담 5회, 적십자회담 3회, 그리고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2회 등 총 16회의 교류·접촉을 가졌다.²⁾ 특히 1984년 9월 초 남한 지역에서 수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북측이 동년 9월 8일 이재민들을 위한 수재물자 제공을 제의해 오자 남한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한 것을 계기로 남북대화는 급진전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의 경우 이산가족 문제에 큰 진전을 보면서, 비록 제한된 규모이긴 하나 「남북 이산가족

2)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서울: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88. 12), pp. 186~326 참조.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을 실현시킴으로써 분단 이래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인사왕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³⁾ 남북의 예술공연단이 상호 방문,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성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비방, 중상, 자극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의 합의에 바탕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 등이 그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곧 무산되고 말았다.⁴⁾

그후 남한은 다방면에 걸쳐 남북교류를 위한 노력을 시도한 가운데, 「7·7특별선언」(1988.7.7)을 통해 새로운 남북한 관계의 모색을 추구했다. 그리하여 그 동안의 남북관계는 「대화없는 대결시대」로부터 출발하여 「대화있는 대결시대」를 지나 「교류있는 대결시대」를 거쳐왔다는 인식 아래 향후 「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시대에의 진입을 예고했다.⁵⁾ 「7·7특별선언」은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여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 차원에서 상호

3) 1985년 9월 20일부터 4일간에 걸쳐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방문을 통해 서울과 평양에서는 총 100명의 쌍방 고향방문단 인원 중 65명이 92명의 가족·친척들과 극적으로 상봉, 재회의 감격을 나누었다.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제2권 (서울: 대한적십자사, 1986.9), pp. 145~146.

4) 1986년 1월에 들어와 북한측은 「팀스피리트 86」 한·미 연례 합동군사 훈련 등 정치·군사적 문제들을 구실로 진행중인 대화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 교착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5)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서울: 국토통일원, 1988.12), pp. 365~403.

왕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이 선언 이후로 남한과 해외동포 종교인들의 방북이 잦아지게 되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1989.6.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1990.8.1) 그리고 「기본합의서」(1992.2) 등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로 남북교류·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80년대 후반까지의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정부 당국자 또는 정부 당국자의 임명이나 주선에 의한 개인 및 단체가 아니고는 남북관계에서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류·접촉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후 '80년대 후반 정부의 일련의 법적·제도적 조치들로 인하여 비로소 남북관계에서 민간 차원의 개인 또는 단체의 존재가 나타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정부 차원의 민간단체의 활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아연 활기를 띠게 되었다.

나. 남북 인적교류 현황

1989년 6월 12일 정부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마련된 이후 통일원은 남북한간의 인적 교류 및 교역에 관한 통계자료를 집계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이산가족, 학술, 문화, 종교, 체육, 경제, 언론출판, 관광교통 및 기타를 포함하여 남북 인적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의 동향은 일단 예외로 두고, 사회문화분야에서 개인 및 민간단

체에 의한 남북 교류·접촉의 내용과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북한방문의 경우, 이 기간 동안('89.6.12~'96.8.31)의 변화추세는 '90년도부터 '91년도, '92년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지침이 마련된 이래 '89년도에는 북한방문 신청(1건·1명)이 그대로 승인(1건·1명)을 얻어 성사(1건·1명)되었다. 이를 계기로 다음해 '90년도에는 신청 7건·199명, 승인 6건·187명, 성사 3건·183명으로, '91년도에는 신청 12건·244명, 승인 11건·243명, 성사10건·237명으로, '92년도에는 신청 17건·303명, 승인 8건·257명, 성사 8건·25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그후 '93년도에 들어와 북한 핵문제가 돌출하자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방문 사례도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후 '94년 10월 21일 제네바 북·미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회복세를 보여 '95년도에는 신청 66건·567명, 승인 59건·546명, 성사 55건·539명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96년도 8월 말 현재까지는 신청 45건·248명, 승인 34건·169명, 성사 22건·13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⁶⁾

남한방문의 경우, 이 기간 동안 ('89.6.12~'96.8.31)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90년도에는 신청 5건·306명, 승인 5건·306명, 성사 4건·291명으로, '91년도에는 신청 3건·175명, 승인 3건·175명, 성사 3건·175명으로, 그리고 '92년도에는 신청 4건·113명, 승인 3건·103명, 성사3건·10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역시

6)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동향」, 제62호(1996.8.1~8.31).

핵문제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남한방문도 성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⁷⁾

한편 이 기간 동안의 남북 주민간 접촉의 경우⁸⁾ 연도별 '성사' 현황을 살펴보면, '90년도 62건·377명, '91년도 266건·1,173명, '92년도 238건·1,015명, '93년도 313건·707명, '94년도 237건·691명, '95년도 494건·1,222명, 그리고 '96년도 8월 말 현재까지는 319건·68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서 남북 주민간 접촉의 경우 정치·군사적 긴장관계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직접적 대면의 경우 뿐만 아니라, 중개인(제3자)이나 전화, 우편, FAX, TELEX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한 접촉의 사례를 모두 포함한 통계수치라는 점에서 증대현상이 이해된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북한방문 및 남한방문의 경우와는 달리, 남한사회의 개인 및 민간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측과 접촉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7) 위의 자료, 제62호.

8) <접촉의 개념>: 접촉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의사교환의 방법·수단·장소 등을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 상호간에 어떤 형태로든 특정 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다면 접촉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FAX, TELEX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남한주민은 남한에 적을 둔 주민(법인, 단체 포함)을 의미하며, 북한주민은 북한에 적을 둔 주민과 조총련 등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을 의미한다. 통일원 교류협력국,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서울: 통일원, 1994), p. 3.

다음으로 남북 주민간 접촉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남북주민간접촉 <분야별> 건·명

구분	신청	승인	불허	처리중	정사
이산가족	2,462 (2,667)	2,457 (2,660)	1 (1)	4 (6)	819 (918)
학술	430 (2,831)	398 (2,505)	30 (301)	2 (25)	115 (1,469)
문화	211 (1,047)	171 (970)	39 (76)	1 (1)	30 (467)
종교	209 (1,021)	166 (894)	42 (98)	1 (29)	46 (478)
체육	108 (291)	102 (268)	6 (23)	-	21 (73)
경제	1,936 (5,135)	1,840 (4,889)	54 (154)	42 (92)	779 (1,453)
언론출판	184 (524)	153 (446)	31 (78)	-	24 (91)
관광교통	118 (418)	117 (382)	8 (28)	3 (8)	29 (86)
기타	273 (1,387)	206 (1,196)	65 (159)	2 (52)	66 (838)
계	5,942 (15,321)	5,610 (14,210)	276 (918)	55 (193)	1,929 (5,873)

자료: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62호(1996.8.1~8.30) (서울: 통일원 교류협력국), p. 9 참조.

위 표에서 보듯이, 이산가족 분야가 신청 건수에서는 최대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⁹⁾ 성사는 1/3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분야에서 주민접촉 신청 및 성사의 대상인 수가 급속히 증가한 점은 북한측의 정경분리원칙에 의해 남한측의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긍정적 반응의 결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현상은 특히, 학술분야를 비롯한 종교, 문화분야에서의 남북 주민간 접촉의 사례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선교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종교분야는 대개의 경우 미국 등지의 해외동포의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활동상에 따른 성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달리 학술 및 문화분야에서의 교류·접촉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많은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 주민간 교류협력의 현황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한 화해·협력은 남북한 주민간, 인적 교류·접촉에 토대를 둔 것으로, 남북한 주민간 교류·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측은 남한측이나 성사여부는 대개 북한측의 태도와 입장에 달린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특히 민간단체 등에 의한 남북한 교류·접촉의 경우, 교류·

9) 특히 주민간 접촉신청에서는 이산가족 분야에서 급속한 신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993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지방거주 이산가족들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접수창구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접촉의 동기, 목적 등은 북한측의 입장과 바깥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북한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간단체는 스스로의 역할을 발견하고 재정립해 나가야 할 단계라고 하겠다.

2. 민간단체의 역할

통일관련 민간단체는 대개 시민운동·교육홍보·남북교류·국제협력 등을 통하여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거나, 또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역량을 배양하고 통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데에 설립목적을 찾는다.¹⁰⁾ 이 단체들의 활동분야는 주로 연구조사활동을 통해 출판물 하거나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단체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 다른 단체들은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남북의 경제교류나 나눔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이산가족이나 실향민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도 있다. 활동내용과 이념적 성향을 보면 재야와 보수의 구분이 아주 뚜렷하고 그 사이에 다양

10) 통일이 민족적 과제이자 온 국민의 관심사임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통일관련 단체가 급속하게 양적인 증대를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금년도 통일원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경우 대중통일운동단체 14개, 조사·연구단체 12개, 남북교류·협력관련단체 3개, 종교계 통일운동단체 5개 등 총 34개와, 그리고 통일원 유관단체로 일반통일운동단체 5개, 조사·연구단체 3개, 여성·남북교류단체 4개, 신규 신고단체 4개 등 총 16개 단체가 등록된 상태이다. 통일원 교육홍보국, 「통일원 허가법인 현황」 및 「통일원 유관단체 현황」, (1996. 8) 참조.

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조직의 규모도 친목회 수준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회원을 거느린 방대한 조직도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운동의 폭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현상이다.¹¹⁾

한편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남북간 교류·접촉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 사회의 개방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간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그러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북한의 체제유지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성사되기는 어렵다. 특히 남북간 이념적 갈등과 팽배한 경쟁의식을 감안한다면, 이념적·정치적 갈등과 마찰의 요소가 적은 부분부터 교류·협력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학술, 문화예술, 종교, 여성, 시민단체 및 재야통일운동단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간 접촉 및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 분야의 민간단체의 역할을 점검해 보자.

가. 학술단체

남북학술교류는 한국학, 국어학, 과학·기술분야, 통일안보분야

11) 경실련통일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일관련 민간단체는 대학 연구소를 포함하여 25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의 민간단체」 (서울: 경실련 통일협회·동아일보사, 1994), p. 5.

등을 중심으로 대개 제3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행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지역에서는 구주한국학회 주최 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89년 이래 '95년도까지 거의 매년 남북한 학자들 사이의 교류·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지역과 특히 중국 연변과 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학자들의 교류·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¹²⁾

민간부문의 학술교류는 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나마 남북간 대화의 맥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근 몇 년 동안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가운데 학술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교류·협력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의 접촉 및 교류에 대한 북한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학술토론회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체제와 이념의 차이에 대한 지식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관용적 태도의 수용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북한측의 능동적인 호응이 예상되는 분야라 하겠다.

남북학술단체들에 의한 교류·접촉의 경우 남북한의 상호 이해 증진과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기관, 학회 등 민간학술단체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문 영역면에서는 순수학문분야의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세부 전문분야로 확대해

12) 회담대책개발기초자료, 「남북사회문화·인도분야 회담 관련 주요일지」 (서울: 통일원, 1995.5), pp. 73~96.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류의 접근방식면에서는 자료 및 정보 교환에서부터 분야별 학술회의 공동개최 그리고 공동연구 및 편찬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³⁾

나. 문화예술단체

'90년대에 들어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¹⁴⁾ 남북왕래교류는 「평양범민족통일음악회」('90.10.14~10.24)와 「'90년 송년통일전통음악회」(12.8~12.13, 서울) 두 건 뿐이었다. 남북문화교류의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물론 북한측의 소극적인 입장과 대규모의 인원·비용·준비시간

13) 최근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둘러싼 마찰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의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이 분야의 남북한간 접촉 및 교류 현상이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96년 8월 5일~9일, 남북한 언어이질화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측의 국립국어연구원과 북측의 국어사정위원회 그리고 중국의 조선어사정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개최지: 중국 길림성 장춘)에서는 남북한 어문규범에 대한 기초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학술 교류의 큰 성과로 평가된다.

'96년 8월 22일~23일, 연변대 주최(개최지: 연길시)로 남북한 방송대중·학장을 포함한 남북한 학자들이 만나 평생교육과 방송교육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96년 9월 13일~15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남측의 한국통일학술포럼과 북측의 사회정치학회가 공동주최로 「민족통일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동포학자 학술회의」(개최지: 북경)가 북측 9명 등 34 명이 참가하여 이 분야의 접촉 및 교류가 진전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4) 문화분야에서 남북인적교류현황('89.6.12~'96.8.31)은 신청 211건(1047명)에 승인 171건(970명)으로 그 중 30건(467명)이 성사되었다. 통일원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62호(1996.8.1~8.31) 참조.

이 소요되는 공연예술의 특성상 교류가 정례화되기 어려웠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문화 및 예술에 대한 남북한간의 인식의 차이에서 교류의 폭을 넓혀가는데 한계가 노정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 문화예술은 문화적 상관주의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변화도 부정하면서 원형보존만을 전통문화로 주장하는 입장과, 각각의 개성적 적용과 현대적 변용의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예술의 우월성과 대결의식에서 파악하는 입장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상관주의란 이를테면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작용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적 가치가 더욱 자유롭게 신장될 수 있는 상태를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¹⁵⁾

남북간 문화예술의 교류·협력은 민간부문에서 주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까지 이 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간 직접교류 방식보다는 제3국에서의 간접교류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성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중국 연변, 일본, 미국 등 해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민간이 주도하는 「남북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하고, 이 센터를 통해 각종 학술교류 및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남북간 상호 이해와 교류·협력의 기반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민간단체는 독일의 사

15) 김문환,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분단조국과 통일문화」, pp. 3~27.

례에서 많은 점을 시사받을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 '70년대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던 문화분야의 교류가 '80년대 상업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한층 활성화될 수 있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현재 경제적 난국에 처한 북한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북한측으로 하여금 문화의 상업적 이용가능성을 인식시킴으로써 문화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관련 민간단체는 북한의 문화재, 미술품, 창작물 등 정치성이 배제된 예술품을 반입하여 남한에서 전시·출간·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¹⁶⁾

다. 종교단체

종교분야에서의 남북한 교류접촉을 위한 노력은 '80년대 초에 들어와서 본격화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분단체제가 고착화되면서 남북한은 냉전적 분위기 속에서, 남한의 종교계는 북한에는 종교 자체가 완전히 말살되고 말았다는 인식과 반공의 기치 아래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만을 견지해 왔다. '70년대에 들어와 북한측은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남한종교인들과의 상호 교류를 제의해 오는 한편, 세계교회협의회 및 아시아불교도평화회의 등 해외에

16) 정부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제의한 바가 있었다. 예로써 「남북 고미술품·고고학자료 교환·공동전시」(1976.4.12), 「남북한고대 유물교환전」(1981.11.16), 「남북한문화교류추진」(1984.11.26) 등이 제의되었으나 북한측의 거부 또는 무반응으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서 열리는 국제종교인회의에 조총련계 대표자를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국에서 남한측 종교인들과의 접촉을 시도해왔다. 말하자면 이 단계는 남북한 종교인들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와 함께 종교인들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북한 종교단체의 활동이 재개되는 시기였다. 이에 남한의 종교계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실정을 폭로하고 북한 종교단체의 활동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대응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남북한간 종교분야에서의 직접적 교류·접촉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나, 상호간 종교단체의 실체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후 '80년대에 들어와서야 남북한 사이에서 비로소 이 분야의 교류·접촉을 위한 시도가 나타났으며 해외에서의 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¹⁷⁾

남북 종교인들의 교류는 북한측의 입장에서는 종교인들을 통일전선과 대외선전에 적극 활용하고자한 의도에서 추진되었다면¹⁸⁾, 이러한 입장과 더불어 '90년대에 와서는 종교인들을 민간 차원의 대외교섭에 활용하고 국제적 종교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에서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와 달리

17) 류성민,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 종교교류를 중심으로 -」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94), pp, 17~31.

18) 북한헌법(1992.4.9 개정) 제68조에는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하여 종교를 전면 부정했던 과거의 입장과는 달리 ‘신앙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으나, 곧 동 조항의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종교활동의 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19) 평양신학원은 (1974년 설립) 3년마다 1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남한측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과 발전 속에서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온 종교계 내에서, 사회주의의 몰락을 계기로 이념에 대한 종교의 우위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사회주의권을 비롯한 북한 지역에서의 선교활동에 대한 강렬한 의지의 표출로 적극적인 접촉 및 교류활동을 전개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특히 종교단체의 다양한 활동 가운데 다음과 같은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 각 종교 및 교파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북선교활동 및 지원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종교, 교단, 교파의 참여 아래 통일과 관련된 결성체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⁰⁾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남북종교교류협의회」(가칭)를 결성한다면, 이를 통해 종교간·교파간 상호 소모적인 분파활동과 경쟁을 극복하고 각 종단의 선교활동이 민족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수재민 지원을 계기로 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의 6개 종단이 민간차원의 대북 구호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결집한 사례는 주목할만 하다.²¹⁾

목사나 기독교연맹의 간부로 진출시키고 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종교학과는 1994년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다. 이 대학 도서관에는 남한에서 출판된 종교서적 2천5백여 권이 비치·열람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조선일보」, 1995.1.15.

20) 박재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종교의 역할」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6.1), pp. 22~28.

21) 「범종단 북한수재민돕기 추진위원회」(범종추; 1996년 1월 15일 발족)는

이러한 결성체를 통해 각 종교들이 지향하는 대북선교사업의 경쟁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이기적 교파활동에 치우치지 않고 민족통일을 전제한 선교활동의 방침과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종교단체들은 평화보장, 인권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해 남북한 당국에 대한 호소와 아울러 국제적 종교단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적극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까지 종교단체의 대북 접촉 및 교류의 목적은 민간부분에서의 한반도 통일환경의 조성이라는 측면과는 무관하게 선교 또는 복음전파의 입장에만 머물렀던 측면이 많다. 따라서 종교단체들의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에서의 역할로 인도주의적 목적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고려할 단계라고 생각된다.

셋째, 종교단체는 자체 재원과 헌금을 통해 북한측에 재정적·물질적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민간부문 가운데 조직적, 재정적 차원에서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힘을 지닌 단체는 종교단체라 할 수 있다.²²⁾ 물론 최근의 북

6개 종단 30여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성체로 북한 동포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적극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편 미국의 빌리그래함전도협회 산하의 유진벨 재단과 제휴하여 활동하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개신교계만을 중심으로 「범종추」와는 다른 입장에서 '북한 동포에 생명의 쌀보내기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22) 독일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신교 및 카톨릭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동독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물질적 지원으로 동독의 교회 단체, 교회부속병원, 양로원 및 기타 기관의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의 분단에 따른 고통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었으며, 물질적인 혜택과 더불어 복음이 전파되어 무신론적인 사회에

한 수재와 관련한 북한돕기운동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체는 종교단체들이다.²³⁾ 종교단체들은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약품, 의류 등 생필품의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들이 힘들고 곤경에 처했을 때, 동포 종교인들로부터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남북한 화해·협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통일후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임이 틀림없다.

라. 시민단체 및 재야단체의 역할

'90년대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은 과거의 민중운동의 계급지향적 성격으로부터 탈피하여 시민사회의 성장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운동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중적 민주화를 과제로 설정하여,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가시적이

서 종교가 생존해 가고, 또한 그와 더불어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 중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동독체제 내의 저항세력을 양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동독정권의 안정에 일시적으로 기여한 듯한 이와 같은 물질적 지원은 결국 다른 여러 가지 지원과 마찬가지로 동독정권의 안정을 오히려 안으로부터 저해하여 붕괴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5. 12), pp. 740~750.

- 23) 대한적십자사의 지원구호금 접수현황(96년 8월 26일 현재)에 의하면, 천주교 2억9천8백만 원, 기독교 2억2천2백만 원, 불교 4천만 원, 「법종추」 5천만 원, 원불교 1천만 원 그리고 10개 사회단체 4억8천2백만 원, 대한적십자사 1억1천1백만 원, 기타 단체 및 개인 5천7백만 원 등 합계 12억7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대한적십자사 보고서, 「북한수재물자지원현황」 (서울: 대한적십자사, 1996.8).

고 투명한 상태로 만들려는 노력과 동시에 일상생활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면서, 상호지원 및 교류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응집력 있는 시민사회를 재창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을 전개해온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은 「경실련 통일협회」를 창립하여 그동안 축적된 시민운동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통일운동에 매진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순수 시민단체에 의한 통일운동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 시민단체는 남북간의 민간교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히면서, 통일에 대비한 의식개혁 캠페인, 남북나눔운동 등을 주요 활동영역으로 삼고 있다.²⁴⁾ 그리고 시민단체가 보통시민의 평범한 정서에 기초한 통일운동을 전개한다면, 민중적 지지를 호소하면서 통일논의 및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재야적 성격이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의 활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시민단체 및 재야단체의 역할은 다른 민간단체의 활동과는 달리 그들의 고유한 활동영역 속에서 보다 새로운 역할의 전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우선 시민단체는 정부

24) 경실련 통일협회는 통일운동의 7대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는 데; 1) 시민사회의 공론을 도출, 범민족적 합의형성, 2) 남북민간교류의 활성화, 3) 통일대비 제도개혁, 의식개혁, 4) 해외동포 네트워크 형성, 강화, 5) 통일정책 감시, 비판, 대안제시, 6) 동북아 평화 및 공동번영의 질서 창출, 7) 통일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창조 등이다. 「제1기 민족화해아카데미 - 평화공존, 화해협력, 민족통일 -」 (서울: 경실련 통일협회, 1996).

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안별 협조와 비판을 제기 하면서 정부·시민단체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여론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통일정책에 반영하는 동시에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의 창출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전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비록 인도주의적 사안이지만 당국간 차원에서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시민단체의 주도로 기획해 볼 수 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의 해외동포에 의해서 개별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노력을 시민단체의 주선과, 특히 중국을 통한 남북 이산가족 재회의 확대방안을 통일운동의 차원에서 고려해 볼 단계라고 생각된다. 여기에다 우리 사회에 편만한 냉전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민족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중적 운동이 요망된다.

한편 남북간 화해·협력 단계에서 재야단체의 역할로는 직접적인 통일운동보다는, 한반도의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군축 및 평화운동의 전개를 기대할 수 있다.²⁵⁾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권문제를 남한사회 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제기함으로써 재야단체가 추구하는 민족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존엄성의 회복과 인간다운 삶의 구현에 있다

25)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회에서 펴낸 「평화협정」이라는 소책자(1995년 간행 자료집)는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 대중의 평화협정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적인 인권단체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야 한다.²⁶⁾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정부 뿐만 아니라 특히, 민간단체에도 공통된 역할은 무엇보다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정부는 시민단체에 의한 이산가족 재회운동, 재야단체에 의한 인권개선운동 등에 대해서는 외교 및 재정적 측면에서 이러한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6) 국제학술심포지엄논문집,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인권”,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북한의 인권실상과 국제사회의 역할」 (한국방송공사(KBS)·한양대학교사회과학대학, 1995.11.28) 참조.

제V장 결론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의 수재 상황이 알려지자 국제사회의 민간기구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민간·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들은 동포애적·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부의 대북지원책을 촉구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의 직접적인 대북지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마찰을 빚게 되었다.

더욱이 일부 통일운동단체들은 통일논의와 개방화와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요구함으로써 통일과정의 적극적인 참여요구가 한층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통일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합리적 관계와 역할 분담의 모색이 요구되고 실정이라 하겠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통일논의를 하나로 수렴하고 그러한 합의에 토대를 둔 국민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정부·민간 간의 올바른 관계설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이미 다원적인 민주사회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이런 까닭에 남북교류 및 협력분야를 비롯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민간부문의 열정과 관심 등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요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혀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통일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민간단체, 즉 학술, 문화예술, 종교, 사회단체 및 재야단체 등의 입장과 성격을 살펴보면,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긍정적 기능 수행을 위한 방안모색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민간단체의 역할을 통해 비정부부문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사회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한사회의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비정부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연대와 활발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민간단체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통일과정에서 비정부 차원의 민간·사회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 가는 추세에 부응하여, 민간단체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정책과 연계·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관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북한이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당국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남한사회의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선 남한의 민간단체는 정부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인도주의적 차원

의 대북지원과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민간단체는 국제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그와 같은 활동을 통해 북한사회에서의 사회단체가 비록 당의 외곽기구에 불과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회단체들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한편, 남북관계에서 보다 높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간 교류 및 협력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기대된다.

남북관계는 비정치적 분야인 경제분야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관계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군사적 문제의 돌출로 인하여 무산되고 다시금 경색국면으로 접어들고마는 현상을 수차례 경험해왔다. 이로 인해 민간 차원의 교류 및 협력은 정치·군사적 문제의 종속변수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으며, 통일과정에서의 민간부문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데에는 근본적으로 북한측의 태도변화와 돌출행위 등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한다면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인내와 장기적 비전 속에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반복적 상황에 따른 남북관계의 주기적 경색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상호 연계시키는 정책을 재고해야 할 단계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 분야를 비롯하여 특히, 대북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시혜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불식되어야 하며, 남북한 상호 공존과 번영을 위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정신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끝으로 통일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조직 및 물질 기반에서 견실한 민간단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러한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민간단체들은 스스로 우리 사회에서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한 통일과정에서의 역할을 확인시키면서, 시민사회의 동의기반을 확충해 가는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요망된다.

참고문헌

1. 자료

- 공보처. 「민주공동체 시민운동의 이론과 실제 - 한국형 복지공동체의 건설 -」. 서울: 공보처, 1996.5.
- 경실련. 「제1기 민족화해아카데미 - 평화공존, 화해협력, 민족통일 -」. 서울: 경실련 통일협회, 1996.
- _____.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의 민간단체」. 서울: 경실련 통일협회·동아일보사, 1994.
- 대한적십자사. 「북한수재 물자지원현황」. 서울: 대한적십자사, 1996.
- _____. 「이산가족백서」, 제2권. 서울: 대한적십자사, 1986.
-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범종추. 「1.15 범종단 북한수재민 돕기추진위원회 고문회의 및 기자회견자료」. 1996.
- 인간사회개발한국포럼. 「WSSD(1995.3.6~3.12) 코펜하겐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와 세계NGO포럼」. 1994.12.
- _____. 「WSSD의 개최배경과 논의과정」. 1994.
- _____.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개발정상회의」. 기사연소식 10호, 1994.
- 정무장관실. 「시민단체해외연수결과보고서 - 인간사회개발부문 중심으로 -」(연수보고서 95-1). 서울: 정무정관(제1)실, 1995.5.

-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5.
- _____. 「남북학술교류발표논문집」. 서울: 통일원, 1994.
- _____. 「남북학술교류발표논문집 II」. 서울: 통일원, 1995.
- _____. 「회담대책개발기초자료: 남북사회문화·인도분야 회담 관련 주요일지」. 서울: 통일원, 1995.
-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동향」, 제62호(1996.8.1~8.31).
- _____.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서울: 통일원, 1994.
- 통일원 교육홍보국. 「통일원 허가법인 현황」 및 「통일원 유관단체 현황」. 서울: 통일원, 1996.
-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백서」.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Serrano, Isagani R. *Civic Society in the Asia-Pacific Region*. CIVICUS, Washington, D.C., U.S.A, 1994.

2. 단행본 및 논문

- 류성민.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 종교교류를 중심으로 -」.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94.
- 박재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종교의 역할」.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6.
-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국제학술심포지엄논문집.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인권.”;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북한의
 인권실상과 국제사회의 역할」. 서울: 한국방송공사(KBS)·
 한양대학교사회과학대학, 1995.
- 길정우. “남북 공존공영을 위한 참여화정책의 구현방안: 비정치적
 분야의 정책방안.” 「통일문제연구」, 제5권 2호 (1993 여름).
- 김문환.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분단조국과 통일문
 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김학성. “남북한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독일사례의 시사점.”
 「동·서독 인적 교류의 실태와 절차적 특징 연구」. 서울: 민
 족통일연구원, 1996.
- 박순성. “남북한 경제협력과 통일 - 제도론적 통일론의 시각에
 서 -.” 제10회 통일문제 심포지엄. 「남북교류협력과 통일」.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4.
- 박영호. “민족공동체 형성과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추진방향.” 광
 복 50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남북화해·협력
 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조 민. “민족공동체 형성방안을 통한 통일과정.”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이현경. “남북한 경제교류·협력활성화 방안 모색: 신기능주의적
 접근.” 「통일문제연구」, 제8권 1호 (1996 상반기).

Fulbrook, Mary. "Aspects of Society and Identity in the New Germany." *Daedalus*, vol. 123, no. 1 (Winter 1994).

3. 기 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부 록: 1>

통일원 유관단체현황

○ 허가법인: 34개

<유형별>

구 분	단 체 수	회 원 수
사단법인체	민족통일협의회 등 29개	254,788명
재단법인체	한국발전연구원 등 5개	3,899명
계	34개	258,687명

<성격별>

구 분	단 체 수	회 원 수
○ 일반·대중단체	민족통일협의회 등 14개	227,607명
○ 통일연구단체	북한연구소 등 12개	5,228명
○ 남북 교류·협력 관계 단체	남북문화교류협회 등 3개	20,926명
○ 종교관련 단체	민족통일희년운동협회 등 5개	4,926명
계	34개	258,687명

○ 신고단체: 16개

구 분	단 체 수	회 원 수
○ 일반·대중단체	민족통일축진회 등 5개	202,880명
○ 통일연구단체	통일안보연구소 등 3개	133명
○ 여성·교류관계	통일여성안보회 등 4개	12,512명
○ 신규 신고단체	통일안보교육협의회 등 4개	1,791명
계	16개	217,316명

* 과거 통일원 등록: 12개 단체

* <부록 1>은 통일원 교육홍보국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통일원 허가법인 현황: 34개

<일반단체: 14개>

단체명	대표자	허가일 및 법적성격	회원수	설립목적
민족통일협의회	송한호	81. 4. 22 사단법인	60,441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역량을 배양하고 민족통일 추진운동을 전개
일천만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조영식	82. 12. 23 사단법인	1,660	이산가족재회를 위한 사업과 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
민족문화통일회	차국찬	81. 5. 27 사단법인	450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 가치관을 정립, 민족중흥과 평화적 민족통일에 기여
민주통일추진회	강명희	84. 9. 21 사단법인	6,685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민주국가 이념홍보와 통일 추진사업추진
통일기념사업회	김동섭	88. 11. 1 사단법인	15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통일노력의 기념사업
평화통일추진회	허태유	89. 3. 17 사단법인	3,455	대국민 교육제도활동을 통해 평화통일 성취에 이바지함
한민족통일연구 중앙협의회	정성욱	91. 2. 11 사단법인	100,000	조국의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통일관을 정립함
한민족통일여성 협의회	김신삼	91. 6. 19 사단법인	35,002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민간 여성단체로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조국의 기반을 조성함
세계한민족평화 통일협의회	김재천	91. 6. 27 사단법인	18,965	한민족 평화통일을 위한 순수한 민간 자생단체로 조국의 평화통일달성을 기본이념으로 함
세계한민족연합	최민자	92. 4. 7 사단법인	550	역사복원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과 민족정신을 재형성함으로써 민족 통일 이룩함
경실련통일협회	강만길	94. 2. 22 사단법인	61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운동· 교육홍보·남북교류·국제 협력 등을 통하여 한반도 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
한겨레평화통일 협회	장승학	94. 3. 10 사단법인	250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 및 문화교류로서 진정한 민족연합을 이룩함
북한인권개선 운동본부	김연준	94.12. 29 사단법인	43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남북 통일과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
한민족통일추진 협회	양순임	96. 3. 15 사단법인	30	한민족공동체형성을 위한 민족사 재정립활동과 해외동포사회의 역량결집을 통해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함

<조사·연구단체: 12개>

단체명	대표자	허가일 및 법적성격	회원수	설립목적
평화문제연구소	신영석	83. 3. 26 사단법인	433	통일방안의 연구 및 홍보를 통한 평화 통일 실현에 기여
북한연구소	김창순	71. 12. 30 사단법인 (85.3. 22) 통일원이관	5	남북한관계, 공산권문제 등의 연구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평화연구원	방 회	87. 12. 21 사단법인	5	남북한관계, 공산권문제 등의 연구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한국발전연구원	안무혁	90. 7. 6 사단법인	3,555	국가안보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정 책개발
한우리연구원	신창민	90. 12. 6 사단법인	60	통일 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제 형성에 대비한 학제간 연구
통일시대연구소	이종률	91. 8. 13 사단법인	300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통일이념 및 정책에 대한 연구와 통일후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견고히 하기 위한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다물민족연구소	박광순	91. 9. 20 사단법인	200	'다물정신'을 비롯한 한민족의제 사상 의 체계적 연구를 통한 민족의 통일사 상 확립
아시아사회과학 연구원	이장희	91. 11. 22 사단법인	160	통일문제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제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 반도에 통일지향적 평화공존 질서를 정착
한국청년 정책연구소	이경훈	92. 4. 17 사단법인	12	통일조국의 중심세력이 될 청년주체의 통일정책 연구
통일경제연구회	김기환	95. 2. 14 사단법인	93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지향하며, 경제 적인 측면이 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담 당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이와 밀접하 게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이고 심도있 게 수행함
백천통일시대 연구원	홍성률	95. 2. 14 사단법인	7	남북통일에 대비한 사전준비와 통일 후 에 전개될 민족문화의 원활한 융화·창달 에 필수적인 제반정책을 조사, 분석, 평 가하여, 민족과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함
한국사회문화 연구원	이장현	95. 2. 14 사단법인	113	남북한 통일의 기반조성 활동을 전개 하기 위하여 남북한 주민간 비정치적 인 사회문화교류운동을 추진하고 통일 에 대비하여 한국사회에 보다 정의롭 고 바람직한 사회문화 풍토를 조성하 는데 이바지함

<남북 교류·협력관련 단체: 3개>

단체명	대표자	허가일 및 법적성격	회원수	설립목적
남북문화교류협회	이배영	93. 1. 11 사단법인	701	남북문화교류사업을 통해 남북쌍방이 수궁할 수 있는 목표지향점을 도출하여 민족통일에 이르는 정지작업의 일익을 담당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김승균	93. 8. 200 사단법인	225	각 부문에 걸친 남북간의 민간교류와 통일관련 연구활동, 통일정책제시 등을 통하여 민족통일에 기여
남북나눔	김성수	94. 1. 14 사단법인	20,000	남북교회가 경건과 절제의 신앙적 기초 위에 영적·물질적 자산을 나누고 공유하여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함

<종교관련 통일운동단체: 5개>

단체명	대표자	허가일 및 법적성격	회원수	설립목적
한민족세계선교통일교육원	조준상	84.11.8문공부 사단법인 (87.12.15) 통일원이관	3,000	북한형제를 복음으로 되찾기 위하여 유능한 전도인을 양성, 통일과업 수행에 공헌
민족통일불교협의회	김태환	93. 11. 30 사단법인	1,101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근본으로 국민적 화합을 선양하는 홍보활동과 통일추진사업 추진
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	김규병	90. 10. 8 사단법인	750	평화통일의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여 북한동포에게까지 평화통일을 촉진함
민족통일희년운동협의회	신현균	93. 2. 12 사단법인	25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북한동포와 남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상호교류하여 조국통일의 여건조성과 단일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
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박중구	95. 10. 12 사단법인	50	새로운 세계질서와 통일환경을 연구하고 통일정책을 개발하며 통일에 대비한 민족공동체의식 발전운동, 시민교육운동을 전개

통일유관단체 현황: 16개

<대중통일운동단체: 5개>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설립목적
민족통일 촉진회	윤재룡	695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민족정기를 양양, 조국통일을 실현
통일경모회	오훈철	1,205	재이불부조에 대한 경모와 망향의정을 통 해 통일촉진운동 전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곽정환	약20만	통일이념을 정립, 국민사상운동 전개
한국통일 철학회	이경영	980	한민족공동체 통일철학교육을 통하여 통 일세대 육성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확 고히 하기 위한 통일대비력 배양
통일교육전문 위원협의회	공 석	858	통일교육 및 국민계도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

<조사·연구단체: 3개>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설립목적
남북평화통일 연구소	동 훈	13	평화적 남북통일문제의 조사연구 활동
통일안보 연구소	신광휴	73	통일안보에 관한 국내외 문헌과 학술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연구
민주이념 연구소	안정수	17	좌경문제 조사분석, 자료수집을 위한 연구단체

<여성·교류관련단체: 4개>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설립목적
통일여성 안보회	이석자	9,507	평화통일을 위하여 여성의 위치와 사명감을 인식시키고, 국내외 홍보·계도 등 통일운동 전개
한국통일 여성협의회	고기효	120	여성들에게 평화통일의 의지를 함양하여 통일성업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
세계평화여 성연합	사길자	2,585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모색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아시아와 그 주변국가들의 협력을 추구하여 세계 평화구현에 이바지
한·중민간 우호협력 교류협의회	이해승	300	북방 한민족 발자취 발굴사업 및 가칭 독립항일역사 선구자탑으로 현상화 및 북한사회까지 민족의 교류증진을 도모함

<신규 신고단체: 4개>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설립목적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안호상	1,000	.
통일안보교육협의회	김화조	456	.
한국통일문제연구소	최인천 (부산)	190	.
민족통일문화연구소	이서행	200	.

'96 통일유관단체 주요 행사계획

○ 통일원 허가법인

단체명	사업명	행사개요
경실련 통일협회	민족화해아카데미 (4.3~7.3, 종로성당 3층 강당)	○ 대주제: 평화공존, 화해협력 민족통일 (강만길, 리영희, 이종석, 이지누, 이영선, 남인숙 등)
	남·북·중·일 국제세미나(7월, 중국 연변)	○ 주제: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가칭) 등 * 세계우리겨레청년대회와 결합
남북나눔	한국기독교 통일정체 세미나(7월, 장소 미정)	○ 발표자: 이만열, 이홍용, 김병로, 김명혁
	『나눔의 기쁨』 발간	격월간, 각 6,000부
	나눔의 분유보내기 모금 및 전달	○ 1, 2, 3, 4차 ○ 적십자 및 국제지구를 통해 전달
	연구위원회 세미나	○ 매월,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남북문화교류협회	남북이산가족의 애환과 망향에 따른 수기 공모	○ 7~10월
	제46차, 제47차 통일정책강연회	○ 6·9월, 장소 미정
	한·중 교류세미나	○ 8월, 중국 길림성·흑룡강성
	제5차 통일문제학술세미나	○ 10월, 세종문화회관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북녘동포돕기 서화전	○ 6.30, 장소 미정
	남북 유물 교환전시회	○ 11월, 세종문화회관
	『남북교류』 발간	○ 3회(4월, 6월, 10월)
민족통일불교협의회	인류평화와 사회안정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	○ 10월, 장소 미정
	토론회 (5월, 장소 미정)	○ 창립11주년기념 민족화합과 통일을 모색하기 위함
	평화통일기원법회 (5월)	○ 불기 2540주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평화통일을 기원함
	『민불』 발간	○ 계간, 각 10,000부

단 체 명	사 업 명	행 사 개 요
다물민족연구소	한국북방학회 학술세미나	◦ '96.10, 올림픽파크텔(발표자: 배찬복, 임양택, 신용수, 노희상 등)
	고구려·발해 학술세미나	◦ 10, 장소 미정(김정배, 신형식)
	발해문화대전	◦ '96.11~'97.3, 장소 미정
	『북소리』 발간	◦ 계간, 각 10,000부
민족통일에스라 운동협의회	평화·민족·통일환경문제 연구 포럼	◦ 각 6·9·11월, 장소 미정
	『통일노래집』 발간	◦ 6월중, 10,000부
	『통일환경연구자료집』 발간	◦ 계간, 각 10,000부
민족통일협의회	통일문예작품 현상모집	◦ 3~9월
	통일문학현상공모	◦ 4~11월
	창설15주년기념 민족통 일전국대회(중앙)	◦ 5.14, 장소 미정
	시·도별 통일축진행사	◦ 5~11월(각 시·도별로 개최)
	통일한마음걷기대회	◦ 6월, 남산순화도로
	통일유관단체연합 통일 문제토론회	◦ 12월, 장소 미정
	『통일』 발간	◦ 월간, 각 18,000부
민족통일회년 운동협회	21세기 민족통일세미나	◦ 10월, 성민교회(이만열 등 3명)
	목회자초청통일세미나	◦ 11월, 광림수양관(최영철 등 9명)
민주통일축진회	통일염원순회연합 대성회	◦ 4.20~30, 동일교회 및 북일교회
	평화통일조찬기도회	◦ 4.25, 금호호텔 대회의실
	평화통일 봉사를 위한 여성세미나	◦ 5.16, 여성회관 ◦ 발표자: 전경화
	통일문제강연회	◦ 6.28, 북한선교센터(강명희)
	주일학교교사 초청강연회	◦ 7.27, 기독교회관 ◦ 내용: 북한의 어린이교육(추만호)
	통일문제토론회	◦ 8.18, 서현교회(이영대)

단 체 명	사 업 명	행 사 개 요
백천통일시대연구원	세미나(10.19, 장소 미정)	◦ 내용: 통일후 각분야 문제점 진단
북한연구소	조찬간담회 (6·9·12월, 타워호텔)	◦ 내용: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쟁점 사항을 부각, 통일에 대비
	국내학술회의	◦ 11월, 장소 미정
	『북한』 발간	◦ 월간, 각 17,500부
	『북한학보』 (20-21집)	◦ 6·10월, 각 1,000부
북한인권개선 운동본부	세미나(7월, 프레스센터)	◦ 주제: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발간	◦ 4월, 2,000부 (최성철 등 10명)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발간	◦ 5월, 3,000부
	『Understand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발간	◦ 8월, 2,000부
세계한민족연합	남북공동학술회의(7.30, 요녕성 심양 발해대학)	◦ 주제: 발해와 환동해권 경제문화교류(최민자, 천문갑, 최석승)
	남북경제협력투자설명회(나진·선봉지역)	◦ 8월, 전경련 소회의실(박명애)
	백두산 천지변 단국사적지 복원사업(10.3)	◦ 내용: 중국 연변자치주 문물관리위원회와 합의서 교환
아시아사회과학 연구원	세미나(5.3,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주제: 북한탈북자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세미나(6.5, 프레스센터)	◦ 주제: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일천만이산가족제회 추진위원회	이산가족2세대 통일의식 고취 수련회	◦ 5.18~19, 남한강수련원
	이산가족문제학술토론회(6.12, 14:00-17:00)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	◦ 주제: 한국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 및 정책방향 연구
	제15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대회(9.20, 세종문화회관)	◦ 내용: 이산가족 결의다짐 및 위안 행사 등
	『이산가족』(53호-56호)	◦ 계간, 각 3,000부

단체명	사업명	행사개요
통일경제연구회	세미나(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	○ 주제: 북한의 위탁가공 산업, 북한의 자유치 현황과 전망, 북한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등
통일시대연구소	분기별 세미나 (4.26/ 6.28/ 10.4, 장소 미정)	○ 주제: 남북한 무역관계의 (비)합리성, 유럽통합과정과 독일의 대응 등(권세기, 김석우 등)
	토요강연회 (장소: 연구소 강의실)	○ 주제: 통일방식과 통일시대 권력구조(6.8, 박범진), 세계화와 통상·통일문제(9.7, 유영), 통일한국과 아시아와의 동반시대(12.7, 왕연균)
평화문제연구소	해의동포초청국제세미나(4.24~25, 대전 유성)	○ 대주제: 민족통합기에 있어서의 해의동포의 역할(방찬영, 최수영, 김성주, 이채진, 김정명, 조광동 등)
	한·중학술회의(6.4~5, 중국길림성 사회과학원)	○ 주제: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길 모색(안)
	통일독일 현장연수 (7.2~10)	○ 주제: 통일독일의 사회복지문제
	한·독위크샷	○ 9월, 장소 미정
	『통일한국』 발간	○ 월간, 각 11,000부(해외판 4,000부)
	『통일문제연구』 (상·하반기)	○ 4·10월, 각 5,000부
	『통일·핸드북』 발간	○ 11. 30일, 5,000부
평화연구원	『동북아와 남북한』 발간	○ 5월, 500부
평화통일촉진회	통일정책강연회 (10월, YMCA 강당)	○ 주제: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길 모색(안)
	『오등』 발간	○ 계간, 각 3,000부
한겨레평화 통일협회	강연회(6.20 / 10.20, 세종문화회관)	○ 주제: 민족과 통일(한완상, 장승하) 평화와 통일
한국발전연구원	학술심포지움 (10월, 장소 미정)	○ 내용: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한국발전』 발간	○ 10회, 각 4,000부
	『한국발전리뷰』 발간	○ 계간, 각 4,000부

단 체 명	사 업 명	행 사 개 요
한국청년 정책연구소	통일의식 설문조사	○ 3~7월, 500부
	통일국제심포지움	○ 6월, 장소 미정
	통일시대를 대비한 20 대 청년의식구조 조사	○ 8~10월, 500부
한국사회문화 연구원	공개토론회(5.10, 15:00-18:00, 프레스센 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제: 북한사회를 바로 알자 ○ 발표자: 김학준, 고영환, 전명철
	공개토론회 (6월, 프레스센터)	○ 주제: 통일과 세계화에 대비한 한 국의 결혼문화 무엇이 문제 인가?
	공청회 (10월, 프레스센터)	○ 주제: 한민족(물자)교류 운동에 관 한 관계기관 및 시민의 여 론수집
	공개토론회 (12월, 프레스센터)	○ 주제: 통일과 세계화에 대비한 한 국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 (12월, 미국)	○ 내용: 남북한 종교현황에 대해 남 북한 학자가 공동 참여
한민족통일 여성협의회	제1회 남북한어린이 통일그림 교류전(4~ 10월, 세종문화회관 제 3전시실)	○ 내용: 남한 어린이 사생대회 및 시상식, 남북한어린이 통일 그림 교류전 개최
	저명인사초청강연회 (6월, 세종문화회관)	○ 주제: 21세기 통일한국 위상과 여 성의 역할(발표자: 송자)

○ 통일관련 신고단체

단체명	사업명	행사개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창립기념강연회	○ 주제: 5.15, 장소 미정
	송년강연회(남북문제)	○ 12.1, 장소 미정
	『남북통일』 발간	○ 격월간, 각 5,000부
남북평화통일 연구소	『Korea and World Affairs』 발간	○ 제간, 각 2,200부 (해외: 1,800부 배포)
민족통일문화 연구소	강연회 (6월, 용산구민회관)	○ 주제: 북한실상과 통일전망 ○ 발표자: 안찬일
	강연회(10월, 평통사무처 회의실)	○ 주제: 통일안보 환경변화와 북 한의 변화가능성(강광 식, 정천구, 이재근)
민족통일축진회	통일염원고향방문달리기 대회	○ 5월, 임진각
	통일관련 학술토론회	○ 10월, YMCA
	『민족통일』 발간	○ 격월간, 각 2,000부
민주이념연구소	세미나(10월, 학술진흥 재단 강당)	○ 주제: 통일교육의 성격, 일반 목표(권병주)
	강연회(6월, 학술진흥재 단 강당)	○ 주제: 한국 정당의 통일정책 ○ 발표자: 이춘근
통일경모회	제11회 한식제 (4.5 강원도 철원군)	○ 목적: 경모사상 양양으로 평화 통일
	통일관련 강연회	○ 6.8, 프레스센터
	제27회 재이북부조합동 경모대회(9.27, 임진각)	○ 목적: 경모사상 양양으로 평화 통일
통일안보교육 협의회	세미나(4.25, 서울호텔)	○ 주제: 북한인권문제
	창립기념강연회	○ 6.10, 세종문화회관 국제회의장
	세미나(8.20, 향군회관)	○ 내용: 통일안보관계

단 체 명	사 업 명	행 사 개 요
통일안보 연 구 소	세미나(4.23, 경희대)	◦ 주제: 안보환경과 통일전망 (안정수)
	통일정책홍보집회 (5.17, 동구여상 강당)	◦ 내용: 우리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 안』의 교육 및 홍보
	남북경협과 문화교류	◦ 10.25, 성북구민회관(윤종현)
	강연회(11.5, 외대강당)	◦ 주제: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사명
한국통일 문제연구소	세미나(5·10월, 부산 해운대 글로리콘도)	◦ 주제: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발표자: 김상훈) ◦ 주제: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발표자: 최학유)
한국통일 여성협의회	제3차 통일문화세미나	◦ 7월, 장소 미정
한국통일 철학회	강연회(5.30, 구민회관 및 강북구청 강당)	◦ 주제: 세계화와 통일문제
	통일 대비한 안보결의 대회(6.25, 도봉구민회 관)	◦ 내용: 통일 합의기반 조성
	세미나 (10.16, 장소 미정)	◦ 내용: 과학적 통합이론의 모색

<부 록: 2>

북한의 사회단체

북한은 일찍이 사회단체를 “사회의 일정한 계급 및 계층들이 혁명 투쟁에서 같은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자원적원칙에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 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시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자원적이며 혁명적인 대중적 정치조직이며 당의 외곽단체이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¹⁾ 나아가 사회단체들을 당의 인전대이며 적극적인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후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²⁾고 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든 정치단체나 조직들은 ‘대중의 사상교양조직’과 ‘당의 충실한 방조자’ 역할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즉, 모든 활동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 아래 놓여 있다. 이는 북한의 통치기구는 정책을 입안·수행, 감독하는 당을 정점으로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의 민간·사회단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자성이나 자율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들은, 노동당규약에 의하면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규정되고 있다.

1)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9), pp. 322 ~323 참조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4.9 개정), 제67조.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의 계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이며,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引轉帶)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이다.³⁾

나아가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꾸리며 동맹대렬을 강화하며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해 동맹원들을 당 두리에 결속시키며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전개하며 동맹원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동원한다”⁴⁾고 규정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중조직은 당과 지도자에 끝없이 충성하기 위하여 대중을 동원하며, 당의 정책과 지도자가 바라는 바에 무조건 추종해야 하는 맹목적 성격을 지닌 단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조직, 사회단체는 준정부기구이자 관변단체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대중조직 또는 사회단체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현재 북한의 주요 사회단체의 연혁과 성격을 간략히 살펴보자.

<주요 사회단체와 그 실태>

현재 북한의 주요 사회단체로는 사회계층별로 조직된 연맹(농근맹, 문예총, 기자동맹 등)과 성별 및 연령별로 조직된 단체(여맹, 사로청,

3) 「조선로동당규약」(1980.10.13), 제9장 당과 근로대중의 조직, 제56항.

4) 「조선로동당규약」, 제57항.

소년단 등) 등의 2대 부류로 대별되는데, 북한의 전주민은 모두 이 2대 조직 가운데 하나 이상의 사회단체에 포함되어 있다.

(1) 조국평화통일위원회⁵⁾

1) 연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노동당의 평화통일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단체로서, 당의 지시 감독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 1961년 5월 13일, 33명의 준비위원과 홍명희를 위원장으로, 북한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가 망라하여 4·19혁명 이후 남한사회의 통일에의 열정에 호응하여 남·북협상론을 제기하면서 조직되었다. 최근 통일문제 및 대남관계에서 『조평통』의 활동이 가장 주목된다.⁶⁾

2) 기능 및 역할

『조평통』은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조국의 자주적통일위업의 달성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정치사업을 전개한다...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광범한 국제적지지를 획득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그러

5)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서울: 동아출판사, 1994), pp. 550~555 참조.

6) 북한은 근래에 들어와 『조평통』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을 초청방문한 이창주 교수(모스크바대학)의 보고(『한계레21』, 제 122호, 1996.8.22) 참조.

나 『조평통』은 「평화적 통일을 조선인민 자신의 손에 의해 외국간섭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성취할 노동당의 시종일관한 방안을 지지한다」고 하여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에 따른다는 취지를 밝혔다. 『조평통』은 평양에서 제 20돌 기념회('81.5.12)를 개최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 구성과 주한미군철폐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조평통』 위원장인 허담이 「3자회담」('84.1.25) 및 「국회회담」('85.4.9)을 제의한 바 있으며, 또한 「남조선 당국의 반통일 책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란 제하에 대남비방을 위한 선전 「백서」를 발표하기도 했다('89.8.8). 그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① 「7.7선언은… 역대의 분열주의 방안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이며, 단계론에 기초한 교류와 교차접촉 외교승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② 「팀스피리트 합동 군사훈련은… 동족간의 대화를 외면하고 외세와 함께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며」 ③ 「범민족대회 예비회담 등… 민간급 대화를 총칼로 탄압하고 있다」고 하면서 「통일을 위해 북과 남의 각계 각층 인민들 사이에 민간급 대화를 발전시켜야 하며, 당국적 차원의 대화들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는 등이다. 최근 북한은 『조국전선』과 『조평통』 공동성명('93.12.22)을 통해 우리 정부를 극렬히 비난한 다음 「현 정부를 결산지을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계 각층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조평통』이 전개하고 있는 대남사업들은 한국내 정세변화에 따라 고발장, 공개질문장, 성명, 백서, 비망록 등의 형태로 즉각적인 반응

7)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773~774.

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내용은 대체로 남북한관계의 현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을 부정적 시각으로 매도하는 대남모략선전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북과 남의 각계 각층 인민들 사이에 ‘민간급 대화’를 강조하여 당국간 대화를 부차적인 것으로 돌리고 있다.

(2)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1) 연혁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은 박헌영·여운형·허헌 등 남한 공산주의자(3백98명)가 중심이 되어 발족한 『남조선 민주주의민족전선』('46.2.15 결성)과 북한의 제정당·사회단체 대표(김일성·김두봉·최용건 등)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을 모체로('46.7.22 결성) 남북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49.6.25)에서 72개 정당·사회단체(7백4명)를 망라하여 현재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으로 결성되었다.

2) 기능 및 역할

『조국전선』의 성격은 “로동계급이 영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조국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묶어 세운 강력한 정치적 조직체”로 규정되고 있다.⁸⁾ 북한은 『조국전

8) 위의 책, pp. 771~772 참조.

선』이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한의 모든 반제애국역량을 단합 시킴으로써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단체가 대남평화통일공세와 남조선혁명을 위한 여건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국전선』은 '60년대 초부터 평화통일방안을 줄곧 제시해오고 있다. '70년대에 들어서는 남한의 민주공화당·신민당·통일당과 『통혁당』 등의 정당사회단체와 해외교포단체를 포함 대민족회의를 소집하자고 요구해 왔다('73.1.24). 또한 한국의 무조건 남북대화재개 제의('79.1.19) 이후 이에 대한 반응으로 『조국전선』은 ① 7·4성명정신 재확인, ② 비방방송 중지('79.2.1일부터), ③ 휴전선상에서의 군사활동 중지, ④ 전민족대회소집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었다.

'80년대에 들어서자 『조국전선』은 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고려연방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민족통일 촉진대회』를 개최하고자 제의해왔으며, 남한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천명되자 곧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그후 연합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철수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의해 왔으며, 『남북국회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90년대에 『조국전선』은 광주민주화항쟁 10주년을 맞아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90.5)하고, 범민족대회 허용을 촉구하는 『비상화대회의』('92.7)를 개최하는 등 대남선전선동기구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9)

9) 「조국전선」은 현재 노동당을 포함하여 24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단체는 다음과 같다; 조선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

(3) 조선직업총동맹

1) 연혁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은 『북조선직업총동맹』으로 출발하여, 『세계직업연맹』에 가입했다. 『직총』은 『북조선직업총동맹』(51.1)이 『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흡수, 통합하여 『조선직업총동맹』으로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비공산국가에서 노동조합의 개념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옹호 및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임금노동자의 자발적 및 자주적인 조직체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다른 공산주의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직맹』은 노동당의 보조부대 내지는 어용단체에 불과하다.

현재 『직맹』은 10개의 산업별, 직업별,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맹원수는 220~250만 명에 이르고 있다(금속기계공업, 화학, 건설, 임업, 공업, 동력운수 및 수산, 경공업, 상업, 교육 및 문화, 공무원의 산업별 직업별). 이 단체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등 타 단체에 가입한 대상자를 제외한 30세 이상의 모든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청우당, 구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기자동맹,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학생위원회,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원회, 조선아시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조선반제투사노명위원회,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내외통신사, 『북한용어 300선집』 (서울: 내외통신사, 1993), pp. 346~349 참조.

2) 기능 및 역할

『직맹』은 형식상 노동자, 사무원들의 조직체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노동당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 즉, 간부는 당에서 지명, 직맹회의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되며 그 사업은 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또한 직맹중앙기관은 물론 산업별직맹(9개), 직맹의 초급단체까지 지도부는 모두 당의 열성분자로 되어 있다. 때문에 직맹은 겉으로는 전체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 세워 이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힘쓰는 대중적 근로단체임을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당과 정권의 정책수행을 최첨단에서 조직, 집행하는 당의 촉매적 어용단체라고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다. 『직맹』의 임무에 대한 규약을 보면, 「직업동맹은 노동당의 옹호자이며 당의 영도하에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 직맹은 노동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은 당 주위에 결속시켜 당이 제기한 혁명임무수행으로 조직 동원된다. 동맹 내의 당 사상체계를 확립하며, 부르주아사상의 잔재를 반대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김일성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1) 연혁

『김일성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은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창립되었다(‘46.1). 그후 『남북조선민청』을 『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통합결성하였고(‘51.1), 『세계민주청년연맹』에 가입했다(‘46.6). 그

리고 제5차대회('64.5.12)에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개칭된 바,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의곽단체의 하나이다. 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이 『사로청』으로 명칭을 바꾼 이유를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결과 청년들의 변화된 처지와 새 임무에 적응토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과거에 계급적으로 각계 각층의 청년들을 망라하고 있던 민주청년동맹이 오늘은 노동청년을 비롯하여 근로농민청년과 근로인텔리청년, 근로인민출신의 학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명칭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한다.¹⁰⁾ 그런데 '96년 1월 사로청 창립 50돌을 맞이하여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김정일을 충효일심으로 받들자고 역설하면서, 『김일성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또다시 개칭하였다.¹¹⁾

『사로청』의 가입대상은 만14세~30세에 이르는 근로자·학생·군인 등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7~13세는 소년단에 가입) 학교, 직장은 물론 심지어 군대 내에까지도 조직이 되어있는데, 현재 약 5백만 명에 이르는 조직원을 두고 있다.

2) 기능 및 역할

『사로청』의 목적은 노동당의 영도 밑에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데 있다. 당 규약에 의하면, 「사로청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

10) 『중앙통신』, 1993.2.10 참조.

11) 『중앙방송』, 1996.1.17.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로청』은 산하에 소년단을 조직하고 있는데, 어린 소년들까지 함께 묶어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동원하고 있다. 이 단체는 북한의 모든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통제하기 위해 해당 연령에 달한 청년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동맹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노동당은 『사로청』을 당의 전위대로 이용, 대주민사업에서 선발대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5) 조선민주녀성동맹

1) 연혁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북조선민주녀성동맹』으로 창립('45.11.18), 『남북조선녀성동맹 합동중앙위원회』('51.1)에서 『조선민주녀성동맹』으로 통합 개칭된 노동당의 여성전위조직이다. 그후 『세계민주여성연맹』이 가입했다('46.10).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의 기초이며, 자본주의제도의 물질적, 정신적 토대이므로 이와 같은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체제는 존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맹』은 이러한 가족제도의 극복을 위해 조직된 단체라 할 수 있다.

2) 기능 및 역할

『여맹』의 임무는 대체로 「여성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정치의식과 문화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근로여성들의 역할을 제고시키며 김일성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바쳐 옹호보위하고」 당의 참다운 근위대, 결사대가 되는데 있다.¹²⁾ 『여맹』의 주요한 기능의 하나는 정치학습을 통한 교양사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가정의 혁명화’란 구호 아래(’86) 여성들이 가정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한다는 미명하에 이른바 「밥공장», 「반찬공장」 등을 건설하는 데에 노력동원을 해왔다. 따라서 『여맹』이 주장하는 강령은 부녀자들을 옹호하며 권익을 옹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노동당이 내세운 정책과 과업을 실천하기 위해 여성들의 모든 힘을 바쳐야 한다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여성은 『여맹』이라는 조직에 구속되고 관계적 동원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여성노력동원 극대화를 위해 희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북한은 여맹서기장 등 여맹관계자들과 전국 여맹일꾼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전국 여맹일꾼들의 충성의 결의모임을 개최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¹³⁾

12) 「조선중앙방송」, 1993.4.29 참조.

13) 「조선중앙방송」, 1993.12.27 참조.

(6) 조선농업근로자동맹

1) 연혁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은 농민들의 전국적 조직체인 『전국 농민조합연맹』의 조직으로부터 출발하였다('45.12.8). 그후 『농근맹』은 『국제농업 및 임업노동자 직업동맹』에 가입했으며('49.12), 『조선 농민동맹』으로 다시 발족했다('51.2.11). 그러나 이 『농민동맹』은 유명무실한 존재였고, 특히 북한에서 농업집단화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더욱 필요없는 조직체가 되었다. 그 조직체는 개인농 시기에 개인 농민을 대상으로 조직한 것인 만큼 집단화된 조건에서 그 역할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그후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49.2.25 로동당 제4기8차전원회의)가 발표되면서 『농업근로자동맹』으로 개칭 조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기능 및 역할

『농근맹』 역시 로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수행하고 당과 농업부문의 노동자 사무원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로동당 제4기9차전원회의('64.6)에서 농근맹을 「협동농민들과 국영농장 및 사회주의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관, 기업소,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혁명적 대중집단이며 당과 농업부문의 근로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농촌의 젊은 세대는 전쟁의 경험이 없어서

계급의식, 혁명의식이 낮기 때문에 생산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질 때까지 사상교육의 강화를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⁴⁾

(7) 조선문학·예술총동맹¹⁵⁾

1) 연혁

『문예총』은 당초 『북조선문학예술가동맹』으로 결성되었으나 (‘46.3.25), 『남·북중앙위 연합회의』에서 『조선문학예술동맹』으로 통합 조직되었다(‘51.3.10). 당시 위원장은 韓雪野, 부위원장은 李太俊이었다. 그후 전국 작가예술가대회에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을 해체하고 작가동맹, 작곡가동맹, 미술가동맹으로 나누어 개편했다(‘53.9.28). 그러나 다시 이것을 통합하여 종전처럼 『조선문학예술가총동맹』으로 재결성하고(‘61.3.2), 산하단체로서 ① 작가동맹, ② 음악가동맹, ③ 미술가동맹, ④ 무용가동맹, ⑤ 연극인동맹, ⑥ 영화인동맹, ⑦ 사진가동맹 등 7개 단체를 두었다. 1973년 이후 작곡가동맹이 추가되어 모두 8개 단체로 조직되어 있다.

14) 최근 남포시 강서구역서 당부장 元東九를 비롯해 『농근맹』 중앙위원 및 후보 위원, 각 지방, 단체, 농근맹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위 7기20차전원회의를 열고 당과 수령에 대한 맹원들의 충실성 교양사업을 일층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조선중앙방송』, 1993.4.22~23 참조.

15) 북한에서 문예관계조직의 최상총기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이고, 당내 문화예술부는 실무부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무원 산하의 문화예술부는 행정실무를 수행할 뿐이다.

2) 기능 및 역할

『문예총』은 노동당의 영도하에 문학예술활동을 통해 근로인민을 공산주의 사상과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기본 임무로 하여, 작가·예술가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 주위에 결속시켜 혁명과업 수행으로 적극 조직동원하기 위한 단체이다. 즉, 공산국가의 문학 예술정책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창작방법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내용과 형식의 채택은 인민성, 계급성, 당성을 강조함으로써 당의 정책 구현에 관한 선전과 교양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의 순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¹⁶⁾

(8) 조선대외문화련락위원회¹⁷⁾

『대외문화련락위원회』는 1955년 반동회의를 계기로 북한이 중·소 일변도 외교에서 중립국·신생국을 겨냥한 다변외교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수준의 친선 및 문화 교류를 표방하면서 중립국을 비롯한

16) 『문예총』은 노동당의 문예정책의 총본산으로서, 작가·예술가들을 당적 사상체제로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창작활동을 통해 김일성의 유일사상을 보위하고 당정책 수행을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케 하고 있다. 특히, 『문예총』은 김일성 개인우상 숭배와 그의 가계의 신격화에 어느 조적보다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문예작품을 김일성, 김정숙(金正日 母), 강반석(金日成 母), 김형직(金日成 父)의 우상화에 동원하고 있다.

17) 『대외문화련락위원회』는 주로 노동당 국제부 및 정부원의교부, 문화예술부 등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주로 민간외교 활동을 주도하는 사회단체로 볼 수 있다. 『북한총람』, pp. 559~560 참조.

서방 각국에서 대외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창립되었다.(1956.4.3).¹⁸⁾ 이 단체는 세계 각지에서 일련의 대외홍보 및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중립국인 오스트리아에서의 그 활동이 두드러진다.

그동안 북한은 오스트리아에 2개의 김일성 연구단체를 조직하고, 2개의 반체단체를 조직하여 대외 선전활동을 전개해오다가, 오스트리아에서 『북한과의 관계촉진협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다('73.5.10). 이 협회는 오스트리아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한 단체로 현재까지 북한이 일본, 프랑스 등 자유진영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외교적 접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산하기관으로는 해외 각국에 조직되어 있는 각종친선협회, 『김일성사상연구소조』, 『조선지자연대성위원회』 등이 있다.

북한의 정당 및 사회단체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결성될 때 각기 독립된 자격으로 71개 정당·사회단체들이 참가함으로써 명목상 정당제도와 사회단체들의 존립이 인정되는 형태를 취해왔으나, 점차 민족적 성향의 정당·사회단체들은 공산당의 탄압으로 거의 전부 해체당하였다. 그후 북한의 정당 및 사회단체는, 즉 노동당을 제외한 우당 및 사회단체는 명실공히 노동당의 정책과 노선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외곽집단으로 변모되고 말았다. 따라서 준정부기구 또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다원적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직·활동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회단체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북한

18) 이 기구의 구성과 부서별 임무 및 활동상황 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조·소친선협회』, 『아시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등 통일전선형성을 위한 사회단체의 성격과 다른 점이 특징적이다.

사회단체들은 자율적인 사회압력 집단으로서 정책결정 과정에 상향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전위조직으로서 오직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중조직체라는 점이 특징이다.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
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 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 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III):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的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
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의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연구보고서 96-10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1-4304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6년 10월 일

發行日 1996년 10월 일
